# 가정상담

2023 01
통권 473호

KOREA LEGAL AID CENTER FOR FAMILY RELATIONS NEWS LETTER · ISSN1227-7568

전국 어디에서나
가정법률 관련 **화상상담**
상담소 홈페이지에서 예약하세요
www.lawhome.or.kr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상담소는 지난 2022년 12월 30일 한 해의 업무를 마감하는 종무식을, 2023년 1월 2일에는 시무식을 갖고 새해 업무를 시작했다. (관련기사 32면)

본소는 지난 2022년 12월 6일 경기주택도시공사 회의실에서 열린 기부금 전달식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GH)-경기도 주거복지센터로부터 경기도 주거복지 서비스 강화를 위해 2천만 원을 기부받았다. (관련기사 33면)

2022년도 마지막 직원재교육 및 자원봉사자 교육이 지난 12월 22일 본소 8층 대강의실에서 박영립 본소 이사의 강연으로 진행되었다. (관련기사 33면)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부정청탁금지법을 적용받는 공직유관단체입니다

청렴은 가까이, 부패는 거리두기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SNS

트위터 ▷ https://www.twitter.com/LegalAidCenter
페이스북 ▷ https://www.facebook.com/korealawhome

4 • 새해 메시지
6 • 특집 ❶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2022년 총결산
10 • 특집 ❷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이혼 전 프로그램 주요 내용 분석 (1)
21 • 가정폭력상담실 | 2023 프로그램 안내
24 • 특별기획 | 음주에 관한 오해와 진실 (4)
26 • 기획연재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00년을 향해 ㊽
28 • 어떻게 할까요
31 • 좋은 책
가문비나무의 노래
32 • 상담소 소식과 상담 통계
36 • 소송구조

발행인 겸 편집인 •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곽배희 | 인쇄인 • 동아서적(주) 대표이사 이상업 | 발행처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출판부 (07239)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6가길 14 • 전화 1644-7077·전송 02-780-0485 | 1987년 1월 28일 제3종 우편물 (나) 인가 / 2023. 1. 10(매월 10일 발행) / ISSN 1227-7568
| 표지글씨 **박병호** 서울대 명예교수 | 표지그림 **이현혜** 평생회원 〈제주동백나무〉

상담소 창립 67주년에 부쳐

# 상담소의 역사가 곧 우리나라 법률구조의 역사입니다

곽 배 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로지 사람만이 시간의 흐름을 매듭지어 의미를 부여하며 역사를 기록하고 이러한 역사를 제대로 이해할 때 한 사회의 올바른 계승과 진정한 발전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해마다 한 해를 마감하고 또 새해를 맞이하는 시점에 각별한 마음이 드는 까닭이 여기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계묘년 새해에 다시 우리 사회의 가정 그리고 법률복지라는 측면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1963년 가사심판법이 제정되고 가정법원이 개설되었습니다. 1986년에는 법률구조법이 제정되었고, 이 법에 의거 1987년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설립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앞서 1956년 이태영 변호사가 여성법률상담소라는 이름으로 한국가정법률상담소를 창설했습니다. 무엇보다 1952년 제2회 고등고시 사법과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합격자가 탄생했고 그 여성은  이런저런 정치적 이유로 판사 임용이 되지 못해 변호사가 되었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변호사가 된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창설자 이태영 선생님은 전후 한국 사회의 사회적 약자로서 여성의 삶과 가정의 중요성을 평생의 소명으로 여겼으며 우리 사회에 '법률구조'라는 개념을 처음 도입하여 상담소를 창설하고 아울러

가사심판법의 제정, 가정법원의 개설에 앞장섰던 것입니다. 사회복지라고 하면 고아원이나 양로원 등의 시설에 대한 후원이 전부이던 시절에 '법 앞에 만인평등' '법률복지'라는 이야기는 실로 획기적인 것이었으니 실제로 지금의 상담소가 여성법률상담소라는 이름으로 문을 열었을 때 많은 여성이 상담소 문 앞에 줄을 서서 눈물을 흘리고 하소연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그 당시 현실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하여 창설 30주년의 해를 맞이한 1986년 상담소는 가정법원의 전국 설치, 법률구조법 제정, 남녀평등을 구현하기 위한 가족법개정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를 통해 상담소는 우리나라 최초의 법률구조기관이자 가정문제 전문 상담기관임을 입증할 수 있게 됩니다. 나아가 이러한 상담소의 역사가 70주년을 앞두고 있으며 이는 곧 법률구조가 우리나라에 뿌리내린 지 70년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정문제와 법률구조라는 두 개의 기둥과 그 기둥을 더욱 튼튼하게 세우기 위해 뻗어나간 각종 사업은 가정문제의 예방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 홍보, 가족법개정을 위한 운동 등 상담소 전반의 활동으로 나타납니다. 또한 소송구조를 위한 백인변호사단을 비롯해 상담소 사업을 돕기 위한 갖가지 방면에서의 자원봉사와 법률구조 임상실습 등 상담소가 사회 저변에 끼쳐온 영향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렇듯 어떻게 보면 끝없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안해 내야 했던 상담소의 사업들은 부족하고 아쉬운 속에서 더 많이 더 효과적으로 번민하는 이웃과 가정을 돕기 위한 고육지책의 결과이기도 했으며 한편으로는 민간단체로서 상담소가 가진 유연함을 통해 최대한의 창의력을 발휘한 결과이기도 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지었던 여성백인회관, 냉난방도 제대로 되지 않고 보수작업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상담소 회관의 신축이 필요했던 때에는 왜 상담소를 찾는 내담자들에게 더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야 하는지를 끊임없이 설명해야 했습니다. 특히 매해 예산 문제로 기재부를 찾을 때마다 민간단체라는 점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상담소에 헌신하는 직원들은 좋지 못한 상담시설, 사무환경까지 감수해야 한다는 편견을 깨우치는 것은 상담소에서 일하는 저희에게는 가장 힘든 일이었습니다. 정말 주저앉고 싶을 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러할 때마다 저희는 새로운 삶을 찾을 수 있다는 기대와 희망으로 상담소를 찾아오는 내담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생각하면서 그 순간을 넘기곤 했습니다.

지금도 민간단체인 상담소를 바라보는 정부 당국의 시선이 그리 따뜻하지는 않습니다. 돈 없고 법을 몰라 자기 권리를 제대로 차지 못하는 우리 사회 소외계층, 약자들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것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이 시대 국가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국가는 이러한 일에 앞장서서 힘들게 일하고 있는 기관에 대해 그것이 비록 민간단체라 할지라도 그 기관이 그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올해 창립 67주년을 맞이하는 상담소의 역사를 모든 이들이 기억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법률구조사업을 관장하는 법무부와 예산을 다루는 기재부와 국회는 상담소가 정말 얼마 안 되는 예산으로 우리 사회의 '가정'을 부여잡고, 가족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며 국가의 근간이 되는 가정을 바로 세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분명한 사실 그리고 그것이 상담소의 역사를 통해 증명되고 있음을 제대로 보아주었으면 합니다. 법률구조사업의 창시자로, 민간단체로서의 장점만을 발휘하고 있는 상담소의 구성원들은 오로지 이러한 점을 자부심으로 우리들의 맡은바 소명을 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새해에도 상담소가 우리 사회의 가정과 더불어 우리가 충실하게 해 온 법률구조사업을 더욱 열심히 해나갈 수 있도록 국가 당국은 물론 우리 사회가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켜봐 주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특집 ❶

2022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2022년 총결산

## 1월

1일 본소 법무부 법문화진흥센터 재지정

3일 시무식

18-20일 본소 교육부 전국 교사 대상 교원직무연수

27일 본소 업무협약기관에 후원물품 전달

동국대학교 및 이화여자대학교 현장실습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생 실무수습

본소 총 상담 4,832건

## 2월

10일 가정폭력상담 사례집 '사랑으로, 희망으로' 발간

21-22일 본소 자원봉사학생 교육 / 조은경 • 박상진 상담위원

24일 정기 전기 이사회

동국대학교 및 이화여자대학교 현장실습

본소 총 상담 4,758건

## 3월

24일 2022년도 정기총회

30일 본소 변호사 회의

본소 총 상담 5,286건

## 4월

8일 법무부 인권국 본소 방문

26일 기획재정부 2023년 예산설명회의 /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 김현옥 재무회계과장

본소 총 상담 5,517건

## 5월

24일 조선일보에 2021년도 본소 노년이혼 상담 통계 및 사례 제공 /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 김진영 상담위원

26일 양육비이행관리원과 실무자협의회 /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 김민선 변호사, 유혜경 상담위원

31일 본소 변호사 회의

본소 총 상담 5,317건

## 6월

17일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와 금융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업무협력 간담회

21일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과 실무수습 업무협약 체결

서울시 및 서울일자리지원센터와 함께 신용회복을 위한 노숙인 시설이용자 및 실무 종사자 교육 실시 / 조은경・전규선 상담위원

24일 가족법개정자문위원회 및 직원재교육

26일 김홍걸 국회의원 본소 방문

30일 본소 연구용역사업 착수보고회의

가정폭력예방지침서 Ⅲ 「둥지교실 Ⅵ-행복한 삶을 위한 비폭력대화」 수정·보완하여 재발간

본소 총 상담 5,135건

## 7월

13일 본소 곽배희 소장 정현미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과 환담

15일 본소 7월15일부터 화상상담 실시 - 전국 어디서나 가정법률상담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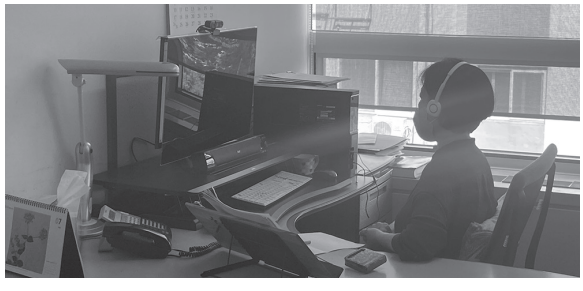

18일 사단법인 여성변호사회와 간담회 /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 복미영 • 권지연 상담위원

동국대학교 및 이화여자대학교 현장실습
서강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생 실무수습

본소 총 상담 5,095건

## 8월

4일 본소 변호사 회의

23일 직원재교육으로 영화 〈라이언〉 감상

25, 29일 본소 자원봉사학생 교육 / 조은경 • 박상진 상담위원

동국대학교 및 이화여자대학교 현장실습

본소 총 상담 5,021건

## 9월

6일 이화여대 법전원 리갈클리닉 II 강의 /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

13-28일 본소 직원 대상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시(비대면)

17일 시민과 함께 하는 출장법교육 / 김진영 • 박상진 상담위원

20일 경기도 GH경기주택도시공사 주거복지지원센터와 간담회/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 조은경 • 전규선 상담위원
이화여대 법전원 리갈클리닉 II 강의 /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

21일 본소 곽배희 소장 이희호 여사 추모 행사 참석

23일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와 금융취약계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28일 본소 신임이사 및 유임 감사 임기 시작 / 박영립, 김상용 신임이사

본소 총 상담 5,307건

## 10월

11일 서울가정법원 소년·가정·아동보호 재판부와 간담회 / 곽배희 소장,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 차연실 • 박상진 상담위원

19일 경기주택도시공사(GH)-경기도 주거복지센터와 주거취약계층의 법률서비스 및 주거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체결

20-26일 반부패 • 청렴 정책 일환으로 청렴 행사 진행

28일 본소 창립 66주년 기념 '보호출산제 도입 – 자녀의 생명과 권리 그리고 친생모의 익명성 여부 논의' 심포지엄 개최

법률홈닥터 변호사와 저소득, 취약계층 법률지원 사업 관련 모임/ 복미영·최수진 상담위원

본소 총 상담 5,006건

## 11월

1,8,15일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리갈클리닉 II 수업 진행/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

7일 서울시립비전트레이닝센터와 노숙인의 신용회복 등에 관한 업무협약체결

14일 가정폭력 연구 일본학자단 본소 방문

16일 서울남부지방법원과 사법접근성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체결

29일 본소 변호사 회의

본소 총 상담 5,672건

## 12월

6일 경기도주거복지센터에서 본소에 기부금 전달식

9일 정기 후기 이사회
인사위원회

15일 '만화로 보는 한국사회의 여성과 가족 –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함께하는 장차현실의 만화일기' 발간

17일 이태영선생님 24주기

22일 직원재교육 및 자원봉사자 교육

30일 종무식

본소 총 상담 4,616건

김유진 사서 | 편집부

특집 ❷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이혼 전 상담프로그램 주요 내용 분석 (I)*

## 제 1 절 서론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1956년 창설 이후 가정문제 전문 상담기관으로 반세기가 넘는 기간 동안 번민하는 이웃들과 함께 해왔다. 상담소를 찾은 이들의 수만큼 다양한 사연들이 있지만 부부갈등에서 시작된 가정문제는 '이혼을 할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되는 경우들이 많다. 가정폭력이 심한 경우처럼 가정 구성원들의 안전을 위해 이혼이 필요한 경우 법적인 조언이나 소송구조 등을 통해 문제적인 상황을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상담실에서 만나게 되는 이혼을 고민하는 많은 사례들의 경우 이혼이 갈등의 해결이 아니라 더 큰 문제적 상황을 초래하는 경우도 많다.

이혼으로 인해 가족이 해체된다는 점, 자녀가 있는 경우 더욱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들과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점, 무엇보다 이혼 이후의 삶이 현재 보다 더 나아져야 한다는 점에서 심사숙고하여 선택해야 하는 인생의 중요한 결정들 중의 하나이다. 또한 이혼은 지극히 개인적인 영역이면서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 등을 생각하면 사회 전체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사회적 과제이기도 하다.

이에 본소는 가정문제의 예방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해 왔던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혼을 고려하고 있는 이들이 현재의 상황과 이혼 후 상황에 대해 충분히 구체적으로 심사숙고하여 더 현실적이고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이혼, 현실과 미래 더 생각해 보기」라는 이혼 전 상담 프로그램을 2004년부터 진행하고 있다.

이혼을 결정하기 전에 '부부갈등의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었는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이혼이 본인과 자녀 그리고 가족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이혼 후에 겪게 될 구체적인 문제는 무엇이며 이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준비는 되어 있는지, 이혼이 유일한 부부갈등의 해결 방법인지, 이혼의 원인이 되는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 있는지'에 대한 숙고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혼 외에는 대안이 없는 경우에도 이혼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 않으므로 이혼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많은 문제들에 대

* 본소가 지난 2021년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의 연구용역사업으로 진행한 「이혼법제 개선방안 연구 – 이혼 절차 중 상담제도화를 중심으로」 가운데 4장의 내용인 본소의 이혼 전 상담프로그램의 주요 내용 분석을 게재하며 지면 관계상 상담사례 부분은 연도별 한, 두 회차만 소개하였다.

한 실질적인 방안과 계획도 필요하다. 현재의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마음만이 앞설 때 장래를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이혼을 위한 협의를 함에 있어 불공정하고 불평등하게 합의하여 나중에 많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처럼 이혼을 선택하기 전에 많은 시간을 갖고 깊이 생각하고 이혼을 선택할 경우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

이상과 같이 「이혼, 현실과 미래 더 생각해 보기」에서는 이혼을 고민하고 있는 부부들에게 이혼 결정에 앞서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할 문제들을 고려하고 숙고하도록 함으로써 이혼결정과정과 그 후의 삶에 대한 준비를 돕는 동시에 갈등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해 이혼에 이를 수밖에 없는 부부들에게 관계 개선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 제 2 절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이혼 전 상담 프로그램 개관

### 1. 목적

이혼 전 상담 프로그램인 「이혼, 현실과 미래 더 생각해 보기」 는 이혼을 고려하고 있는 부부에게 이혼이 과연 부부갈등을 해결하는 최선책인지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는 상담프로그램이다. 이혼은 부부갈등을 해결하는 마지막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대안적인 방법을 모색함이 없이 결정짓는 경우가 많다. 이혼을 선택하고 현재의 배우자와 결부되지 않는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는 선택은 개인의 자유의지에 달려 있다. 법도 사회적 규범도 이를 제한하거나 규제할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다만 이혼의 결정이 개인에게 달려 있는 만큼 이혼 후의 문제 또한 당사자가 감당해야 할 몫이다. 따라서 이혼을 고민하는 이들은 “이혼이 행복한 생활 또는 보다 나은 생활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인가? 자신과 자녀, 그리고 가족들에게 닥칠 현실을 미처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선택한 결정이 이혼 후에 후회를 가져오지는 않을 것인지? 이혼을 피하고 부부관계를 정상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지 못하여 시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등에 관한 숙고의 시간을 이혼결정전에 꼭 가져야 한다. 만약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어렵다면 이혼의 결정을 잠시 미루고 다른 선택이나 방법이 있는지 고민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 이혼은 행복하지 않다고 느껴지는 결혼생활에 대한 무조건적인 도피나 포기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아무런 대책도 없이 오로지 현재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서 다급하게 내리는 결정은 후회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이혼, 현실과 미래 더 생각해 보기」는 이혼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으로 이혼 결정을 독려하거나 혹은 반대로 이혼하지 말 것을 설득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다만 이혼을 결정하기 전에 잠시 동안만이라도 자신의 문제에 대해 보다 차분하고 객관적으로 심사숙고할 기회를 가짐으로써 후회 없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 2. 프로그램 내용

「이혼, 현실과 미래 더 생각해 보기」는 1단계 이혼에 관한 비디오 교육과 이혼 관련 법률상담, 2단계 집단상담으로 구성되어 있다. 1단계인 ‘비디오 교육’은 기초교육과정으로서 이혼경험자들과 전문가가 들려주는 이혼의 효과에 관한 폭넓은 정보를 통해 이혼이 주는 영향, 이혼의 현실과 이혼 후의 생활에 대해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리고 ‘이혼 관련 법률상담’을 통해서 내담자의 혼인생활과 관련 하여 법적으로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쟁점과 이혼에 앞서 꼭 알아 두어야 할 다양한 영역의 법적 문제들에 대비하고 예상할 수 있도록 하여 부당한 권리침해를 막고 미성년자녀의 복리와 보호 그리고 혼인당사자의 권리 구제를 돕는다.

2단계인 ‘집단상담’은 가족상담전문가와 함께 본소가 제작한 워크북을 작성하면서 이혼의 원인 및 내담자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이혼의 의사를 정리해 보고, 이혼이 생활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보며, 자녀양육계획과 생활

계획을 통해 이혼 후의 생활에 대해 예측해 보고 대책을 세워보는 시간을 갖는다. 그리고 이혼문제 전문상담가의 슈퍼비전 아래 이혼을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이 이혼을 고민하게 된 문제를 이야기하며, 서로가 공감과 지지, 이해를 통해 현재의 심리적 어려움을 회복하는 시간을 가진다. 이를 통해 내담자 스스로 자신이 이혼 결정을 다시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지 그렇다면 어떠한 노력들을 시도해 볼 수 있는지, 이혼을 결정하였다면 배우자와 이혼과 관련한 어떠한 것들에 대해 협의하고 협의가 불가능할 경우 재판이 필요한 경우 이를 위해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할지에 대해서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갖는다.

내담자에게 이혼결정에 대해 좀 더 생각해 볼 의사가 있는 경우, 이혼의 원인이 되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본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알코올과 이로 인한 폭력이 문제가 된다면 알코올치료를 위한 방법을 찾아본다. 정신적인 건강이 문제가 된다면 전문의를 만나보고 치료를 받도록 설득하는 방법, 배우자와 성격적인 면에서 조화롭지 않다면 부부갈등회복 프로그램에 부부가 함께 참여하는 방법, 성적인 문제가 있다면 의사의 처방에 따른 치료방법 등을 시도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이혼이 불가피하다면 이혼에 따르는 문제들, 자녀양육과 재산분할 및 위자료 문제 등 이혼 시 부부간 협의해야 하는 문제들뿐만 아니라, 경제적 독립방안(취업문제 포함), 생활대책(장기 및 단기적 차원), 한부모 가정의 자녀양육 방안, 자녀들의 이혼충격에 대한 극복 방안, 자녀 및 가족관계의 재설정, 이혼 후의 심리적 문제들(상실감, 우울증, 외로움, 불면증 등), 원만한 대인관계 방안, 이혼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 스트레스 극복 방안 등과 같은 이혼 후의 삶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숙고해 본다.

### 3. 구체적 상담진행 사례

다음은 프로그램의 진행방법을 소개하기 위하여 2단계 집단상담의 실제 상담 사례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다.

**가. 사례 - 1 : 2006년 09월 25일**

- 참 가 자 : 여성 4명, 남성 3명

- A씨 : 여성 30대, 혼인기간 3년, 부부갈등 사유 : 폭력
- B씨 : 남성 40대, 혼인기간 8년, 부부갈등 사유 : 성격차이, 생활양식차이 (B씨와 C씨는 부부임)
- C씨 : 여성 40대, 혼인기간 8년, 부부갈등 사유 : 성격차이, 생활양식차이
- D씨 : 여성 40대, 혼인기간 15년, 부부갈등 사유 : 폭력
- E씨 : 남성 50대, 혼인기간 20년, 부부갈등 사유 : 내담자 의처증
- F씨 : 여성 30대, 혼인기간 10년, 부부갈등 사유  외도
- G씨 : 남성 40대, 혼인기간 8년, 부부갈등 사유 : 성격차이, 배우자의 이혼강요

- 상담내용

- A씨(아내) : 지난주에 남편이 다시 폭력을 행사하여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 슈퍼바이저: 힘들었겠군요. 어렵겠지만 남편이 폭력을 행사할 것처럼 생각되면 일단 자리를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부부가 같이 오신 분은 어떤 일로 오셨습니까?
- B씨(남편) : 아내와 성격차이 때문에 힘듭니다. 저는 보수적이고 꼼꼼한 성격인 반면, 아내는 내성적이고 의사표시를 잘 하지 않는 성격입니다. 집안일을 할 때도 저는 한번 할 때 제대로 하자는 입장인데, 아내는 지금 못하면 나중에 하자는 입장이라 갈등이 많았습니다. 아내와 의견차이가 있을 때, 저는 화를 내고 나면 금방 잊어버리는데, 아내는 속에 쌓아두었다가 나중에 폭발시키는 성격입니다. 차라리 제가 화를 낼 때 저한테 같이 화를 내든지 아니면 화를 좀 참으라고 하면 될 텐데, 그렇게 하지도 않으면서 나중에 그 일이 기폭제가 되어 더 큰 싸움을 하게 됩니다.
- 슈퍼바이저: 아내는 남편의 어떤 점이 아내를 가장 힘들게 한다고 생각합니까?

- C씨(아내) : 남편의 성격이 보수적이라, 제가 집 밖에 나가는 것을 싫어하고 구속합니다. 저에게 여성으로서의 입장보다는 엄마와 아내의 입장만 요구합니다. 마트에 갔다가 시간이 조금만 늦어져도 잔소리를 하고, 일 년에 몇 번 있는 친구모임도 남편이 집에 있을 때는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아이를 두고 친구모임에 다녀온 것 때문에 큰 싸움을 한 적도 있습니다.
- 슈퍼바이저: 일 년에 몇 번 정도라면 남편이 집안일을 대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 B씨(남편) : 아이들이 아빠보다는 엄마를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남편이 출장 가는 날인데 출장준비도 안 해놓고 친구모임에 가서 전화도 안 받는 것에 무척 화가 났습니다.
- 슈퍼바이저: 아내가 고의로 전화를 안 받은 것이 아니라면 남편이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내와 대화하다가 화가 치밀어 오르면 집 밖에 나가서 좀 걸으면서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도 좋습니다. 아내도 남편이 집안일에 대해 지적하는 것을 잔소리라고 생각하지 말고 좀 더 진지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분은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 D씨(아내) : 현재 친정에서 지내고 있고, 남편은 여전히 이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슈퍼바이저: 본인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D씨(아내) : 저는 아이들과 같이 살고 싶지만, 아이들은 할머니가 있어서인지 굳이 엄마를 찾지 않는 것 같습니다. 위자료나 재산분할은 다 끝났는데, 아이들 문제가 걸려서 이혼을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슈퍼바이저: 일단 이혼을 결심했다면 우선은 본인의 심리적 안정과 경제적 문제 해결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녀들이 지금 엄마를 굳이 찾지 않는다면 자녀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나중에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분은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아내와는 대화를 해보셨는지요?
- E씨(남편) : 아내의 귀가가 계속 늦어서 누구를 만나고 오는지 물었는데, 아내는 백화점에 다녀왔다고만 하고 자세한 말을 하지 않습니다.
- 슈퍼바이저: 본인과 아내 둘 다 괴롭히는 대화방법을 사용하고 계시는군요. 아내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 E씨(남편) : 아내가 제 물음에 솔직하게 대답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 슈퍼바이저: 아내가 솔직하게 대답하기를 원한다고 하지만, 남편 스스로 이미 아내가 다른 누군가를 만나고 있을 것이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아내가 솔직히 대답한다 해도 부부간의 대화가 이루어지기는 어렵습니다. 자꾸 의심이 든다면 아내가 퇴근할 때 만나서 같이 집에 오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의심이 들 때마다 스스로에게'아내를 믿어라'라고 마음속으로 말해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다음 분은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 F씨(아내) : 지금 쉼터에서 지내고 있고, 지난주에 집을 나온 뒤 처음으로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 슈퍼바이저: 아이들은 엄마가 집을 나와 있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 F씨(아내) : 큰 딸은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작은 아이는 엄마가 집에 돌아왔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아이들을 생각하면 이혼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대로 살기도 엄두가 안 납니다.
- 슈퍼바이저: 남편이 가정폭력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검찰에 요청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분은 어떤 일로 오셨습니까?
- G씨(남편) :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고 있고 저는 이혼을 원하지 않아서 상담에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내성적이고 말이 없는 성격이고 아내는 활달하고 직선적인 성격이라 그동안 갈등이 많았습니다.
- 슈퍼바이저: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G씨(남편) : 성격이 너무 안 맞아서 같이 살 수 없다고 합니다. 부부가 취미도 다르고 같이 하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제가 아내보다 수입이 적어서 갈등이 있었습니다.
- 슈퍼바이저: 아내가 이미 이혼을 결심했다면, 현실적으

로 이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남편 본인뿐입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남편 스스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아버지교육을 받아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 G씨(남편) : 예전에는 아내가 아버지교육을 받으라고 했는데, 지금은 감정의 골이 너무 깊어서인지 그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 슈퍼바이저: 아내와 함께 할 수 있는 교육이나, 취미 생활 등을 찾아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 E씨(남편) : 부부가 같이 오신 분은 부부 상담을 좀 더 받으면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C씨(아내) : 남편이 집에 올 때가 되면 또 뭘 가지고 지적을 할지 가슴이 두근거릴 정도입니다.
- D씨(아내) : A내담자는 이혼을 생각하고 있다면, 이혼 후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준비가 필요합니다. 저는 이혼을 결심하고 상담에 왔는데도, 막상 실행에 옮기려니 무척 힘들었습니다.
- A씨(아내) : 상담을 받기 전에는 폭력을 사용하는 남편의 잘못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상담을 받으면서 저도 남편을 무의식적으로 자극한 점이 있지 않았는지 반성했습니다.
- F씨(아내) : G내담자는 제 남편과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 남편도 저와 공통의 취미도 없었고, 경제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좀 더 아버지역할, 남편역할을 중시하고 경제적으로 좀 더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슈퍼바이저: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잘 들으셨습니까?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속에서 스스로 답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마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사례- 2 : 2006년 11월 27일**

- 참 가 자 : 여성 4명, 남성 1명

- A씨 : 여성 30대, 혼인기간 10년, 부부갈등 사유 : 외도
- B씨 : 남성 60대, 혼인기간 35년, 부부갈등 사유 : 배우자의 이혼강요, 경제갈등
- C씨 : 여성 40대, 혼인기간 15년, 부부갈등 사유 : 외도, 경제갈등
- D씨 : 여성 40대, 혼인기간 7년, 부부갈등 사유 : 경제갈등
- E씨 : 여성 40대, 혼인기간 12년, 부부갈등 사유 : 외도

- 상담내용

- A씨(아내) : 남편이 6개월째 다른 여성을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얼마 전에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남편에게 외도사실을 알고 있으니 정리하라고 했지만, 남편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집을 나간 상태입니다. 저는 이혼할 의사는 없지만, 심정적으로 남편이 용서가 안 되고 자꾸 화가 납니다.
- 슈퍼바이저: 이혼할 의사가 없다면 남편이 집으로 돌아오도록 아내가 노력해야 합니다. 남편에게 집에서 좋아하는 음식을 해놓고 기다릴 테니 들어오라고 말해보십시오. 남편을 감정적으로 대하기보다는 이성적으로 남편이 돌아올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분은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 B씨(남편) : 아내가 장사하느라 집안일에 소홀했고, 장사도 잘되지 않아서 빚도 있습니다. 10년 전에 아내가 진 빚 때문에 다투다가 아내를 폭행한 적이 있는데, 지금 와서 그 일로 이혼을 요구합니다. 저는 이혼할 의사가 없지만, 아내와 자꾸 부딪혀서 같이 사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 슈퍼바이저: 자녀들은 이혼에 대해 뭐라고 합니까?
- B씨(남편) : 아직 자녀들에게 의견을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 슈퍼바이저: 단지 예전의 폭행만으로 이혼을 요구한다고 보기에는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는 이유가 확실하지 않습니다. 다음번 상담에 아내와 같이 올 수 있습니까?
- B씨(남편) : 말해보겠지만 올 것 같지 않습니다.
- 슈퍼바이저: 아내가 이미 이혼을 결심했다면, 현재 부부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본인밖에 없습니다. 최대

한 아내를 설득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분은 어떤 문제로 오게 되었습니까?

- C씨(아내) : 남편이 생활비도 주지 않고 외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파트타임으로 일해서 생활비를 겨우 벌고 있는데, 남편은 집에도 잘 들어오지 않고, 들어와도 남남처럼 지내다가 말도 없이 다시 나가곤 합니다.
- 슈퍼바이저: 본인은 이혼을 원하십니까?
- C씨(아내) : 아이들 때문에 이혼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남편이 집에 들어오는 것은 바라지도 않으니 생활비라도 제때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남편이 이혼을 요구한다면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최소한 아이들이 결혼할 때까지는 명목상으로라도 부모 양쪽이 다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슈퍼바이저: 남편이 들어왔을 때, 가계부를 내놓고 경제적인 문제와 지금 말한 본인의 생각을 솔직하게 말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분은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 D씨(아내) : 남편이 그동안 생활비를 주지 않다가 일주일 전, 4개월 만에 20만 원을 내놓았습니다. 남편은 전에도 화가 나면 생활비를 주지 않았고, 그러면서도 제가 밖에 나가서 돈을 버는 것도 싫어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음이 내키면 생활비를 조금 주면서 생색을 냅니다.
- 슈퍼바이저: 힘들지만, 본인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남편을 변화시키기보다는 본인이 변해야 합니다. 남편이 화를 내는 이유를 잘 파악하고, 되도록이면 남편이 화를 내게 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굴한 것이 아니고 본인이 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힘들지 않기 위해서 남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다음 분은 어떤 일로 오셨습니까?
- E씨(아내) : 남편의 외도로 상담에 오게 되었습니다. 가정을 유지하고는 싶지만, 남편이 용서되지 않습니다. 남편은 생활비를 줄 테니 결혼은 유지하고 자기는 외도상대와 즐기면서 살고 싶다고 합니다. 남편의 외도를 용납하라고 요구하면서 아내인 저에게는 가정을 지키라고 합니다.
- 슈퍼바이저: 큰일이군요. 일단 남편을 비난하기보다는 아내 본인을 먼저 추스르는 일이 급선무입니다. 돈 드는 일이 아니라도 가벼운 등산이라든지, 친목모임 등 자신만의 취미생활을 가지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신의 생활이 없으면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나고 정신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다른 분들 이야기 들어보니 어떠신가요?
- E씨(아내) : 변명 같지만, 그동안 사느라고 바빠서 제 생활이 너무 없었던 것 같아서 후회됩니다.
- A씨(아내) : 저도 제가 하고 싶은 일, 저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저 자신을 좀 추스르고 싶습니다.
- C씨(아내) : 저도 잘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남편의 외도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이성적으로 대처하고 싶습니다.
- B씨(남편) : 아내와 결혼생활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겠습니다.
- D씨(아내) : 말씀하신 대로 남편이 왜 화가 났는지 알아보고 남편과 대화해보려고 합니다.
- 슈퍼바이저: 여기 오신 분들 모두 어렵고 힘들겠지만, 배우자가 변화하려면 자신이 먼저 변화해야 합니다. 부정적인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자신의 생활을 가지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와서 얘기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 제 3 절 「이혼, 현실과 미래 더 생각해 보기」 상담 사례

이하에서는 2004년부터 2021년까지 17년 동안 본 소에서 진행된 이혼 전 상담프로그램의 2단계 집단상담의 대표적인 상담사례를 발췌하여 소개한다.

2004년 9월부터 2021년 10월 총 17년 1개월 동안 277회기 744명(여성 629명, 남성 115명)이 상담에 참여하였다.

## 1. 2004년~2010년

### 가. 2004년

2004년 이혼 전 상담 2단계 프로그램은 9회기가 진행되었으며 22명(여성 21명, 남성 1명)이 참여하였다.

**▶ 2회기 2004년 10월 25일**

- 참 가 자 : 여성 5명

- A씨 : 여성 30대, 부부갈등 사유 : 외도
- B씨 : 여성 20대, 부부갈등 사유 : 폭언, 폭력
- C씨 : 여성 40대, 부부갈등 사유 : 생활양식 가치관차이, 대화단절
- D씨 : 여성 40대, 부부갈등 사유 : 외도
- E씨 : 여성 30대, 부부갈등 사유 : 폭언, 폭력, 고부갈등

- 상담내용

① A씨(아내) : 남편의 외도와 가출로 부부갈등이 심화되었으나 아내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
② B씨(아내) : 성격차이와 남편의 폭언, 폭행으로 부부갈등이 심화되어 아내가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남편이 용서를 빌어 소 취하를 고려중이다.
③ C씨(아내) : 성격차이와 생활양식 및 가치관 차이, 대화단절로 부부갈등이 심화되었다. 아내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
④ D씨(아내) : 남편의 외도와 거짓말로 부부갈등이 심화되었다. 남편의 외도를 용서해 준 적이 있었는데 남편이 다시 외도를 하였다. 아내는 이혼을 고려중이다.
⑤ E씨(아내) : 남편의 폭언, 폭행, 무시와 시어머니와의 불화로 부부갈등이 심화 되었다. 아내는 이혼을 원하지 않으나 남편과 시어머니는 이혼을 요구하고 있다.

### 나. 2005년

2005년 이혼 전 상담 2단계 프로그램은 22회기가 진행되었으며 80명(여성 77명, 남성 3명)이 참여하였다.

**▶ 1회기 2005년 4월 25일**

- 참 가 자 : 여성 4명

- A씨 : 여성 50대, 부부갈등 사유 : 외도, 가출
- B씨 : 여성 30대, 부부갈등 사유 : 유기
- C씨 : 여성 30대, 부부갈등 사유 : 성격차이
- D씨 : 여성 40대, 부부갈등 사유 : 외도

- 상담내용

① A씨(아내) : 남편이 외도하며 가출 중이다. 남편이 재산을 임의로 처분했고, 아내 명의로는 남편이 진 채무도 있다. 남편은 이혼을 강요하지만, 아내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
② B씨(아내) : 부부갈등이 있던 중 남편이 외국으로 유학을 갔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남편 명의 집을 처분하고, 아내에게는 집을 구할 돈도 생활비도 전혀 주지 않고 있다. 아내는 이혼을 고려중이다.
③ C씨(아내) : 남편과 성격차이로 부부갈등이 심화되었다. 그러나 아내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
④ D씨(아내) : 남편의 외도로 부부갈등이 심화되었다. 아내는 이혼을 고려중이다.

**▶ 4회기 2005년 9월 12일**

- 참 가 자 : 여성 3명, 남성 1명

- A씨 : 여성 30대, 부부갈등 사유 : 외도
- B씨 : 남성 40대, 부부갈등 사유 : 외도, 가출
- C씨 : 여성 30대, 부부갈등 사유 : 폭력

● D씨 : 여성 40대, 부부갈등 사유 : 내담자 외도, 폭력

- 상담내용

① A씨(아내) : 남편이 다른 여성과 주고받은 휴대폰 문자와 사진을 통해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되었다. 아내는 이혼소송을 준비 중이다.
② B씨(남편) : 아내의 외도가 의심된다. 아내는 자녀들을 데리고 가출하여 이혼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남편은 가정생활 유지를 원한다.
③ C씨(아내) : 남편의 폭행으로 아내는 집을 나와 가정폭력 피해자쉼터에 입소하여 이혼소송을 중이다.
④ D씨(아내) : 남편의 잦은 폭행으로 아내는 집을 나와 이혼소송 중이다.

**▶ 5회기 2005년 11월 14일**

- 참 가 자 : 여성 9명, 남성 2명

● A씨 : 남성 60대, 부부갈등 사유 : 고부갈등, 경제갈등, 내담자의 폭력
● B씨 : 여성 50대, 부부갈등 사유 : 장기간 별거
● C씨 : 여성 40대, 부부갈등 사유 : 외도, 폭력
● D씨 : 여성 40대, 부부갈등 사유 : 외도
● E씨 : 여성 40대, 부부갈등 사유 : 성격차이
● F씨 : 여성 40대, 부부갈등 사유 : 가출
● G씨 : 여성 40대, 부부갈등 사유 : 외도, 무시모욕
● H씨 : 남성 50대, 부부갈등 사유 : 내담자 외도
● I씨 : 여성 40대, 부부갈등 사유 : 경제갈등, 고부갈등
● J씨 : 여성 20대, 부부갈등 사유 : 생활양식 가치관차이, 무시모욕
● K씨 : 여성 20대, 부부갈등 사유 : 외도, 폭력

- 상담내용

① A씨(남편) : 고부갈등과 경제 갈등으로 부부갈등이 있었고, 남편의 폭력으로 부부갈등이 심화되었다.
② B씨(아내) : 남편과 성격차이 및 장기간 별거로 인해 부부갈등이 심화되었다.
③ C씨(아내) : 남편의 외도와 폭력으로 부부갈등이 심화되었다.
④ D씨(아내) : 남편의 외도로 부부갈등이 심화되었다.
⑤ E씨(아내) : 성격차이로 부부갈등이 심화되었다.
⑥ F씨(아내) :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며 가출하여 부부갈등이 심화되었다.
⑦ G씨(아내) : 남편의 외도와 무시·모욕 및 경제 갈등으로 부부갈등이 심화되었다.
⑧ H씨(남편) : 남편이 외도하였고, 아내와의 애정상실을 이유로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⑨ I씨(아내) : 경제갈등과 손자 낳기를 강요하는 시어머니와의 갈등으로 부부갈등이 심화되어 이혼을 고려중이다.
⑩ J씨(아내) : 성격차이, 생활양식 및 가치관 차이, 무시·모욕으로 인한 갈등으로 부부갈등이 심화되었다.
⑪ K씨(아내) : 남편의 외도, 폭언, 폭행, 무시·모욕으로 인해 부부갈등이 심화되어 이혼소송 중이다.

**다. 2006년**

2006년 이혼 전 상담 2단계 프로그램은 17회기가 진행되었으며 82명(여성 66명, 남성 16명)이 참여하였다.

**▶ 2회기 2006년 3월 13일**

- 참 가 자 : 여성 1명, 남성 1명

● A씨 : 남성 40대, 부부갈등 사유 : 고부갈등, 내담자 폭력
● B씨 : 여성 60대, 부부갈등 사유 : 자녀문제

- 상담내용

① A씨(남편) : 고부갈등과 남편의 폭력으로 부부갈등이 심화되었다. 남편은 이혼을 원치 않으며 아내에게 사과하

였으나, 아내는 이혼을 요구하며 자녀들을 데리고 가출한 상태이다.

② B씨(아내) : 자녀문제로 인해 부부갈등이 심화되었다. 시집간 큰 딸의 가정불화 때문에 남편과 다툼이 잦았다. 남편은 큰딸의 부부갈등이 아내가 잘 가르치지 못해서 그런 것이라고 아내를 비난한다.

**▶ 3회기 2006년 5월 8일**

- 참 가 자 : 여성 5명, 남성 1명

- A씨 : 여성 30대, 부부갈등 사유 : 주사, 폭력
- B씨 : 여성 30대, 부부갈등 사유 : 폭력, 경제갈등, 고부갈등
- C씨 : 여성 40대, 부부갈등 사유 : 외도, 내담자 폭력
- D씨 : 여성 60대, 부부갈등 사유 : 폭력, 경제갈등
- E씨 : 남성 40대, 부부갈등 사유 : 시가와 갈등, 내담자 폭력
- F씨 : 여성 40대, 부부갈등 사유 : 폭력

- 상담내용

① A씨(아내) : 남편이 술을 마시면 아내에게 폭언을 하고 자녀들을 폭행해 부부갈등이 심화되었다.

② B씨(아내) : 경제갈등과 남편의 폭력 그리고 고부갈등으로 부부갈등이 심화되어 별거 중이다. 아내가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남편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

③ C씨(아내) : 남편의 외도로 아내가 남편을 폭행하였다. 남편은 아내에게 남편의 외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라고 요구하여 부부갈등이 심화되었다. 남편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

④ D씨(아내) : 남편이 퇴직 후 경제문제로 자주 다투다가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부부갈등이 심화되었다. 아내는 이혼을 원하지만, 남편이 이혼을 거부한다.

⑤ E씨(남편) : 시가와의 갈등으로 아내와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아내를 폭행하였으며, 아내는 이혼을 요구하며 가출한 상태이다. 남편은 이혼을 원하지는 않으며, 관계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알기위해 상담에 참여하였다.

⑥ F씨(아내) : 남편의 폭력으로 집을 나와 있다. 이혼소송을 고민 중이다.

**라. 2007년**

2007년 이혼 전 상담 2단계 프로그램은 18회기가 진행되었으며 56명(여성 51명, 남성 5명)이 참여하였다.

**▶ 1회기 2007년 1월 22일**

- 참 가 자 : 여성 4명, 남성 1명

- A씨 : 여성 30대, 부부갈등 사유 : 성격차이, 생활양식 가치관차이
- B씨 : 여성 50대, 부부갈등 사유 : 경제갈등, 폭력
- C씨 : 여성 30대, 부부갈등 사유 : 성격차이, 생활양식 가치관차이
- D씨 : 여성 40대, 부부갈등 사유 : 도박중독, 폭력
- E씨 : 남성 50대, 부부갈등 사유 : 이혼강요

- 상담내용

① A씨(아내) : 성격차이, 생활양식 및 가치관차이로 부부갈등이 심화되었다. 남편이 아내에게 가사 일을 하지 않는다며 이혼을 요구하는 것과 자녀를 시가에 맡기는 문제로 남편과 자주 다투었다. 남편은 아내가 가사를 돌보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혼을 요구하고 있다. 아내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 남편과 관계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알고 싶다.

② B씨(아내) : 경제갈등과 남편의 폭력으로 현재 별거 중이다. 남편이 사업에 실패하면서 다툼이 잦아졌고, 남편이 아내를 폭행하면서 부부갈등이 심화되었다. 아내가 이혼을 요구했으나 남편이 거절하고 있다.

③ C씨(아내) : 성격차이와 생활양식 가치관차이로 별거 중이다. 가사분담 문제와 자녀를 처가에 맡기는 문제로 다툼이 잦았으며, 남편이 먼저 이혼을 요구하였다. 아내는 이혼을 원하지는 않으나, 남편의 강경한 이혼요구에 대처할 방법을 알고 싶다.
④ D씨(아내) : 남편의 도박중독 및 폭력으로 부부갈등이 심화되었다.
⑤ E씨(남편) : 아내가 이혼을 강요하며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 남편은 이혼을 원치 않는다.

**마. 2008년**

2008년 이혼 전 상담 2단계 프로그램은 22회기가 진행되었으며 80명(여성 77명, 남성 3명)이 참여하였다.

**▶ 2회기 2008년 4월 28일**

- 참 가 자 : 여성 5명

- A씨 : 여성 50대, 부부갈등 사유 : 폭력
- B씨 : 여성 40대, 부부갈등 사유 : 외도
- C씨 : 여성 40대, 부부갈등 사유 : 외도, 가출
- D씨 : 여성 50대, 부부갈등 사유 : 외도
- E씨 : 여성 40대, 부부갈등 사유 : 시가와 갈등, 가출

- 상담내용

① A씨(아내) : 남편의 폭력으로 부부갈등이 심화되었다. 남편의 폭력으로 이혼했다가 재결합한 상태이며, 현재 남편의 폭력으로 다시 별거 중이다. 아내는 자녀 때문에 재결합했으나, 남편의 폭력이 개선되지 않아 이혼을 준비중이다.
② B씨(아내) : 남편의 외도로 부부갈등이 심화되었다. 남편은 외도한 사실에 대해 별다른 죄책감이 없으며, 말로는 관계를 정리했다고 하지만 아직도 외도상대와 만나고 있다. 아내는 이혼을 고려중이나, 이혼 후 심리적, 경제적 준비가 되어있지 않아서 망설이고 있다.
③ C씨(아내) : 남편의 외도로 부부갈등이 심화되었다. 남편이 가출하여 연락도 하지 않고 생활비도 전혀 보내주지 않아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혼소송을 준비 중이나, 남편의 소재를 알 수가 없어서 이혼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④ D씨(아내) : 남편의 외도로 부부갈등이 심화되었다. 아내가 이혼을 요구했으나, 남편이 핑계를 대며 이혼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상태이다.
⑤ E씨(아내) : 시가와의 갈등 및 남편의 폭력으로 부부갈등이 심화되었다. 현재 남편의 폭력을 피해 집을 나와 있는 상태이며, 남편에게 부부상담을 받을 것을 제안했지만 남편이 거절하였다.

**바. 2009년**

2009년 이혼 전 상담 2단계 프로그램은 21회기가 진행되었으며 66명(여성 53명, 남성 13명)이 참여하였다.

**▶ 1회기 2009년 1월 12일**

- 참 가 자 : 여성 2명, 남성 2명

- A씨 : 여성 30대, 부부갈등 사유 : 성격차이, 폭력
- B씨 : 남성 30대, 부부갈등 사유 : 성격차이, 내담자 폭력
- C씨 : 여성 30대, 부부갈등 사유 : 폭력, 폭언
- D씨 : 남성 30대, 부부갈등 사유 : 폭력, 처가와 갈등

- 상담내용

① A씨(아내) : 성격차이, 남편의 폭언, 폭행으로 아내가 가출하여 별거 중이다. 부부 모두 이혼을 원하지 않으며, 아내는 남편이 분노조절을 잘 할 수 있기를 바란다.
② B씨(남편) : 성격차이, 남편의 폭언, 폭행으로 부부갈등이 심화되어 아내가 가출하였다. 부부 모두 이혼을 원하지 않으며, 부부관계의 회복을 원한다.

③ C씨(아내) : 남편의 폭언, 폭력, 무시, 모욕으로 인해 부부갈등이 심화되었다. 아내는 이혼을 원하지 않고 부부관계의 회복을 원한다.
④ D씨(남편) : 아내의 폭력과 처가의 지나친 간섭으로 인해 부부갈등이 심해졌다.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고 있으나 남편은 이혼을 고민 중이다.

**사. 2010년**

2010년 이혼 전 상담 2단계 프로그램은 22회기가 진행되었으며 68명(여성 54명, 남성 14명)이 참여하였다.

**▶ 1회기 2010년 1월 11일**

- 참 가 자 : 여성 4명, 남성 1명

- A씨 : 여성 50대, 부부갈등 사유 : 고부갈등
- B씨 : 여성 40대, 부부갈등 사유 : 외도
- C씨 : 여성 30대, 부부갈등 사유 : 시가와 갈등
- D씨 : 남성 30대, 부부갈등 사유 : 내담자 외도
- E씨 : 여성 50대, 부부갈등 사유 : 외도

- 상담내용

① A씨(아내) : 결혼 후 시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고부갈등이 있었고, 시어머니가 지병으로 사망하자 남편이 아내를 원망하고 비난하여 부부갈등이 심화되었다. 아내는 자녀의 장래 때문에 이혼을 원하지는 않는다.
② B씨(아내) : 남편의 외도로 부부갈등이 심화되었고, 자녀들도 남편의 외도를 모두 알게 되었다. 아내는 이혼을 고려중이다.
③ C씨(아내) : 시어머니, 시누이와 아내와의 갈등이 심한데, 남편은 방관자적 태도를 보여 부부갈등이 심화되었다. 남편은 이혼을 원하지 않으나 아내는 남편이 변화하지 않으면 이혼할 의사가 있다.
④ D씨(남편) : 남편의 외도로 부부갈등이 심화되었다. 남편과 아내 모두 이혼을 원하지 않으며 부부관계의 회복을 원한다.
⑤ E씨(아내) : 남편의 외도가 의심된다. 아내는 이혼을 원하지 않으며 부부관계의 회복을 원한다.

**▶ 4회기 2010년 9월 27일**

- 참 가 자 : 여성 3명, 남성 1명

- A씨 : 여성 30대, 부부갈등 사유 : 무시모욕, 종교갈등
- B씨 : 여성 40대, 부부갈등 사유 : 폭언, 폭행, 의처증
- C씨 : 여성 40대, 부부갈등 사유 : 생활양식 가치관차이, 대화단절
- D씨 : 남성 50대, 부부갈등 사유 : 폭언, 무시, 외도

- 상담내용

① A씨(아내) : 남편은 분노조절에 어려움이 있다. 종교갈등과 아내에 대한 무시모욕으로 부부갈등이 심화되었다. 아내는 이혼을 원하지 않고 남편이 변화하기를 바란다.
② B씨(아내) : 남편이 분노조절에 어려움이 있고, 폭언, 폭행, 의처증으로 인해 부부갈등이 심화되었다. 남편은 이혼과 별거를 요구하나 아내는 이혼의사가 없다.
③ C씨(아내) : 성격차이, 생활양식 및 가치관의 차이, 대화단절로 부부갈등이 심화되었다. 남편이 별거를 강요하고 있으나 아내는 별거를 반대한다. 아내는 부부관계의 개선을 원한다.
④ D씨(남편) : 남편이 퇴직한 이후 아내의 폭언과 무시로 부부갈등이 심화되었다. 아내의 외도가 의심되지만 남편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

- 계속 -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
천정환 변호사
조은경 상담위원

**2023 가정폭력 관련 프로그램**

# 가정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각자의 욕구와 동기에 맞춰 단계별로 진행

본소는 가정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해서 가정폭력피해자 상담 및 구조, 지원과 함께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교정을 위한 상담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가정폭력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폭력피해자와 행위자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각자의 욕구와 동기에 맞추어 단계별로 진행하고 있다.

2023년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도 코로나 팬데믹이 여전하여 본소에서는 2023년에도 대면과 비대면 상담을 적절하게 활용할 것이다. 원칙적으로 개별상담과 부부상담은 대면상담으로, 집단상담, 음주문제상담, 교육강좌, 자조모임 등은 화상회의 플랫폼 줌(zoom)을 활용한 비대면 상담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2023년에 진행될 본소의 가정폭력 관련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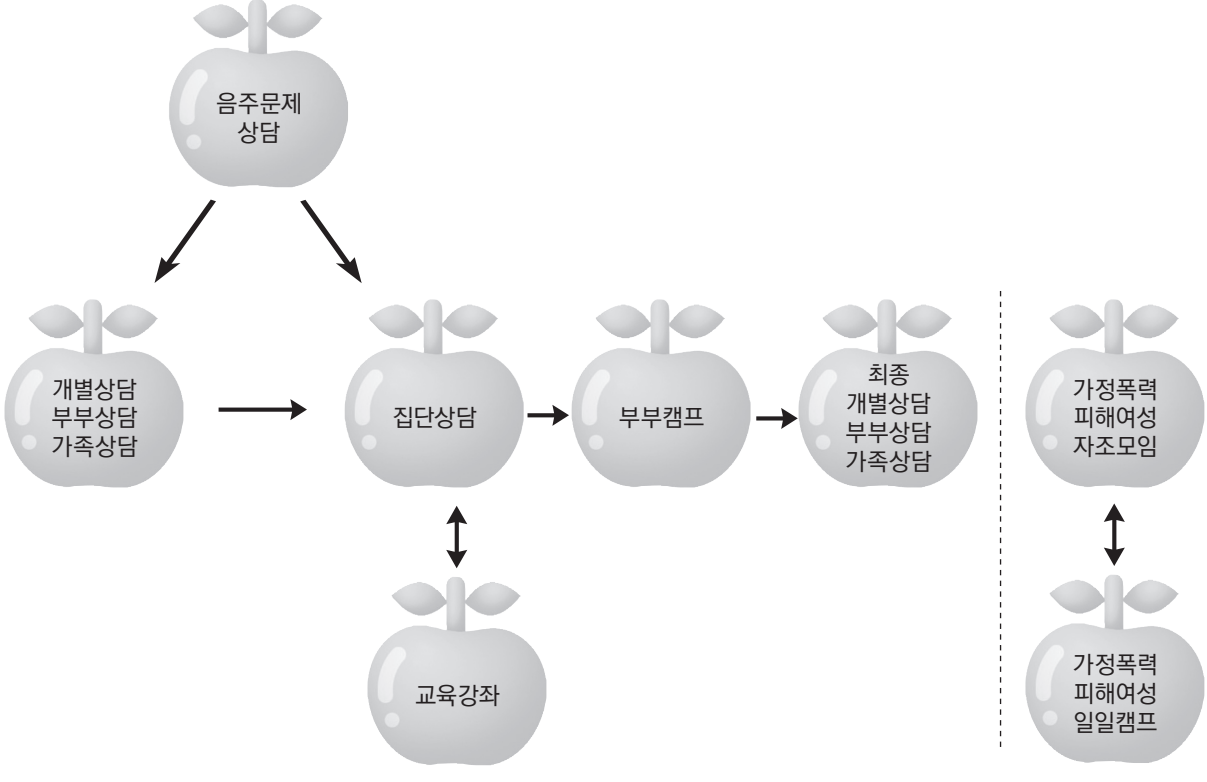

## Ⅰ. 개별상담/부부상담/가족상담

(사전예약 필수)

폭력에 대한 책임 및 인식 개선, 가정폭력 행위자 및 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접근과 더불어 가족체계적인 접근을 통해 부부갈등의 원인을 파악하고 폭력재발방지 및 갈등해결방안 모색

▶ 일 시 : 연중
▶ 대 상 : 가정폭력 행위자 및 피해자
▶ 진 행 : 본소 상담위원

## Ⅱ. 음주문제 집단상담 (사전예약 필수)

가정폭력 행위자의 음주문제를 진단하고 절주나 단주 등 대처방안을 다각도로 모색, 음주문제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 일 시 : 4회(각 4회기, 매회기 2시간)

| | |
|---|---|
| 날짜 | 1회 : 2/17, 2/24, 3/3, 3/10 (4회기)<br>2회 : 5/26, 6/2, 6/9, 6/16 (4회기)<br>3회 : 8/25, 9/1, 9/8, 9/15 (4회기)<br>4회 : 11/3, 11/10, 11/17, 11/24 (4회기) |
| 회기별 주제 | 1회기 : 음주와 뇌<br>2회기 : 음주와 트라우마 / 음주와 성인아이<br>3회기 : 알코올의 특성 / 음주와 공동의존<br>4회기 : 음주와 회복, 자기 들여다보기 & 자원탐색 |
| 시간 | 음주문제 피해자 오후 1시 30분 ~ 3시 30분<br>음주문제 행위자 오후 3시 30분 ~ 5시 30분 |

▶ 대 상 : 음주문제가 폭력 및 부부갈등의 원인이 되는 행위자 또는 피해자
▶ 진 행 : 김혜선 교수
(강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혜선 교수

## Ⅲ. 집단상담 (사전예약 필수)

가정폭력에 대한 이해, 가정폭력에 대한 법적 책임 인식, 집단성원들과의 토론 및 상호 피드백을 통해 가정폭력의 문제를 보다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해결방안 모색 · 공유

집단상담 ①
▶ 일 시 : 1월~2월. 매주 목요일
오후 6시 30분 ~ 9시 30분
3월~12월. 매주 수요일
오후 6시 30분 ~ 9시 30분
▶ 대 상 : 가정폭력 행위자
▶ 진 행 : 이서원 소장
(한국분노관리연구소)

이서원 소장

집단상담 ②
▶ 일 시 : 매주 목요일
오후 6시 30분 ~ 9시 30분
▶ 대 상 : 가정폭력 행위자 및 배우자(부부)
▶ 진 행 : 정윤경 교수
(연세솔루션상담센터)
김희진 교수
(명지대학교 방목기초교육대학)

정윤경 교수

김희진 교수

집단상담 ③
▶ 일 시 : 필요시
▶ 대 상 : 가정폭력의 문제가 있는 부모, 자녀, 형제-자매 등 부부 외 가족구성원

## Ⅳ. 둥지교실 : 무료공개강좌

나와 가족의 정신건강과 행복한 가족관계형성을 돕는 교육강좌

▶ 일 시 : 매월 둘째 수요일
오후 3시 ~ 5시
▶ 대 상 : 참여를 원하는 사람 누구나
▶ 진 행 : 이서원 소장
(한국분노관리연구소),
황순찬 초빙교수
(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일정 및 강의제목

황순찬 교수

| 일 정 | 강 의 제 목 | 강사 |
|---|---|---|
| 1월 11일 | 분노 : 마음대로 안 되는 세상,<br>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 이서원 소장<br>(한국<br>분노관리<br>연구소) |
| 2월 8일 | 조바심 : 될 듯 말 듯,<br>원하는 걸 빨리 이루고 싶다 | |
| 3월 8일 | 미움 : 내가 싫어하는 걸 가진 너,<br>너를 멀리하고 싶다 | |
| 4월 12일 | 우울 : 자꾸 어긋나는 일들,<br>내 뜻대로 살고 싶다 | |
| 5월 10일 | 열등감 : 나보다 잘난 너,<br>나 잘난 맛에 살고 싶다 | |
| 6월 14일 | 후회 : 원하지 않았지만 일어난 일,<br>현명하게 살고 싶다 | |
| 7월 12일 | 매사 불만족과<br>관계갈등을 초래하는 성격장애 | 황순찬<br>초빙교수<br>(인하대학교<br>사회복지학과) |
| 8월 9일 | 시간이 흘러도 엷어지지 않는 고통,<br>트라우마 | |
| 9월 13일 | 삶의 의지를 약화시키는<br>기분장애 | |
| 10월 11일 | 존재를 삼킨 타인의 시선,<br>불안장애 | |
| 11월 8일 | 모든 걸 끝장내겠다는 충동,<br>불안조절장애 | |
| 12월 13일 | 갈망에서 시작된 절망,<br>중독장애 | |

## Ⅴ. '나, 너, 그리고 우리' 행복찾기 부부캠프

부부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여 부부화합을 도모하는 1박2일 숙박프로그램

▶ 일 시 : 연 2회
(2023년 4월 8일 ~ 9일 / 11월 11일 ~ 12일)
▶ 대 상 : 사전에 가정폭력 관련 프로그램에 참석한 부부
▶ 자녀들을 위한 별도의 미술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 Ⅵ. 라오니 모임 (가정폭력 피해여성 자조모임)

가정폭력 피해여성이 서로에게 심리적 지원을 제공하며 건강한 삶을 만들어 가도록 도움을 주는 자조모임

▶ 일 시 : 매월 첫째, 셋째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 오후 1시 30분
▶ 대 상 : 가정폭력 피해여성
▶ 진 행 : 장희숙 교수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장희숙 교수

## Ⅶ. 라오니 캠프 (가정폭력 피해여성을 위한 일일 캠프)

가정폭력 피해여성을 위한 지속적인 역량강화와 폭력에 대한 대처능력 향상을 도모하는 일일 캠프

▶ 일 시 : 연 1회 (2023년 12월 2일 토요일)
▶ 대 상 : 가정폭력 피해여성

특별기획

음주문제예방**

# 음주에 관한 오해와 진실 (4)

## 음주운전은 절대 금물입니다!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일 경우(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로 음주운전의 처벌규정은 최고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 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음주운전은 자신의 불행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엄청난 고통을 가하는 중대한 사회적 범죄입니다. 음주자의 굳은 의지와 대중교통 이용의 작은 불편만 극복한다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는 사라질 수 있습니다.

### ● 음주교통사고 발생 현황[1)]

- 2019년도 교통사고 발생 229,600건 중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는 15,708건으로 6.8%를 차지하였습니다. 음주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295명, 부상자는 25,961명으로 보고되었습니다.
- 음주사고발생이 가장 많은 연령대는 41~50세이며 7,172건(27%)으로 나타났습니다.
- 혈중 알코올 농도 0.10~0.14%에서 6,593건(42%)으로 가장 많은 교통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는 소주 6~7잔 정도를 마셨을 경우이며, 신체와 정신의 조절기능이 현저히 떨어져 휘청거릴 정도의 신체변화를 보이는 음주량입니다.

### ● 음주가 운전능력에 미치는 영향

- 운동능력 저하 : 술은 우리가 걸을 때 균형을 유지해 주는 신경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술을 많이 마시면 균형을 유지하면서 운전하는데 지장을 줍니다.
- 시력의 지각능력 저하 : 술은 안구의 운동능력을 저하시키고, 시야의 인식영역을 줄여 차의 간격을 유지하기 힘들게 하고, 사물을 정확하게 지각하는 능력을 감소시킵니다.
- 차선을 지키는 능력 감소 : 술은 전방과 측면 거리의 판단능력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차선을 제대로 지키면서 운전하는데 지장을 줍니다.
- 정보처리 능력 저하 : 술은 두뇌가 정보를 처리하는 속도를 둔화시키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저하시킵니다.
- 주의 집중능력 감소 : 술은 운전신호, 앞차, 보행자, 가야할 방향 등의 정보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매순간 주의집중 해야 하는 능력을 감소시킵니다.

### ● 음주운전 이진아웃제도를 아십니까?[2)]

음주운전 이진아웃제도는 상습적인 음주운전을 예방하고 가중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2019년 6월

** 상담소는 일찍부터 우리 사회에 가정폭력의 문제를 제기하여 가정폭력특례법 제정을 이끌어냈으며, 법의 제정 이후에는 가정폭력상담소로써 다양한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가정폭력을 불식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2003년부터 '가정폭력예방지침서' 시리즈를 발간하기 시작하였고 시리즈의 하나로 2006년부터 『음주에 관한 오해와 진실』을 발행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음주관련 문제가 나날이 심각해지는 현실에서 상담소는 가정폭력 행위자들을 대상으로 하였던 음주문제상담을 일반인들에게도 확대실시하고 있으며 건전한 음주문화를 위한 자료로 쓰일 수 있도록 〈가정상담〉에도 이 자료를 게재한다.

1) 출처 : 도로교통공단, 2019 교통사고 통계분석

2)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참조. https://www.koroad.or.kr/kp_web/drunkDriveInfo7.do

25일부터 기존 삼진아웃제도에서 이진아웃제도로 강화되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행정처분(정지 또는 취소)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으로 적발되면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2년간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박탈하는 제도입니다.

## ■ 우리나라의 음주 운전 관련 법규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개정 2018. 12. 24.〉

[전문개정 2011. 6. 8.]

[시행일 : 2019. 3. 28.] 제44조의 개정규정 중 노면전차의 도입에 관한 사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6. 9.〉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8. 12. 24.]

[시행일 : 2020. 12. 10.] 제148조의2

## ■ 2019년 6월 25일부터 음주운전 기준 및 처벌 강화

1.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 몰수
   - 음주운전 전력자의 음주운전 사망사고 발생시
   - 최근 5년 간 4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자가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2. 동승자 등에 대한 적극적인 형사처벌
   -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열쇠 포함)을 제공한 자
   - 음주운전을 권유·독려·공모해 동승한 자
   - 피용자(被用者) 등 지휘감독관계에 있는 사람의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한 자
   - 음주운전을 예상하면서 술을 제공한 자 등

   ☞ 종전에는 음주운전을 한 본인만 처벌받았다면 이제는 음주운전을 부추기거나 방치한 동승자 또한 음주운전 방조범 또는 음주 교통사고 공동정범으로 적용

3. 음주운전 사고 시 처벌 강화
   -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2회 이상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취소된 날로부터 3년간 재취득 불가
   -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이상인 음주운전자의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보다 법정형이 무거운 위험운전치사상죄[3]를 적용

4. 음주측정 거부에 대한 처벌 강화
   -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거부할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가 가능, 면허 취소. 이후 1년간 면허 재취득 불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벌금형.

   - 가정폭력예방지침서 ② 음주문제예방 「음주에 관한 오해와 진실」 중에서

3) 위험운전치사상죄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을 살펴보면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00년을 향해 ㊽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민국 법률구조의 역사***

# 본격화하는 호주제 폐지 운동 (2)

| | |
|---|---|
| 2000년 11월 | 호주제 폐지 위헌소송 |
| 2001년 2월부터 | 호주제 폐지 서명운동 본격 전개 |
| 2002년 5월 | 2차 호주제 폐지 위헌소송 제기 |
| 2003년 5월 27일 | 민법개정안 발의 |

2001년 2월, 상담소는 호주제폐지를위한시민의모임과 공동으로 광화문 시네큐브에서 영화인 및 문화계 인사를 대상으로 호주제 폐지 서명운동을 전개 했으며, 3월 3일과 5일 양일간 이화여대 사회봉사센터가 주최한 사회봉사박람회에 참가하여 상담소의 활동을 알리는 한편 호주제 폐지 서명을 받았다. 또한 4월에는 호주제로 인한 피해 사례를 모집・선정하여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과 서부지원이 헌법재판소에 호주제 관련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하도록 했다. 또한 상담소는 호주제 폐지를 위한 거리 서명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하는 한편, '호주제 바로알기' 전단지를 제작해 서명운동과 더불어 전국에 배포하기 시작했다. 헌법재판소에서 위헌법률 심판 제청이 진행되면서 상담소는 6월에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9인에게 호주제 관련 사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으며, 7월에는 호주제 폐지 홍보책자 〈우리 평등하게 살래?!〉를 제작하여 전국에 배포하고, 여성주간을 맞아 본부와 전국 지부가 공동으로 '호주제 폐단 알리기' 거리 홍보 및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이러한 활동에 힘입어 상담소가 간사단체로 활동하던 호주제폐지를 위한시민연대는 한국여성유권자연맹이 네티즌을 대상으로 실시한 투표에서 '2001여성' 단체・기관 부문에 선정되어 공로패를 받기도 했다. 10월에는 호주제폐지를 위한 시민연대가 여성신문사와 공동으로 국회의원들의 호주제에 관한 의식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2002년에 들어서 호주제폐지를위한시민연대는 5월 15일 제2차 호주제 위헌 소송을 제기했고, 상담소는 7월 여성주간에 즈음하여 여성부와 공동 협력사업으로 호주제 폐지를 위한 단편영화 〈우리 평등하게 살래?!〉를 제작하여 전국에 배포하면서 호주제 폐지 운동의 대중화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같은 해 9월에는 국회여성위원회의 연구개발 용역과제로 '호주제 폐지 전략과 호주제 폐지에 대비한 대안연구'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이는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된 호주제 폐지 운동의 이론적 근거가 되었다.

2003년 1월, 상담소는 국가인권위원회에 호주제에 대한 공식적인 의견 표명을 요청하였고, 위원회는 3월 '호주

*** 상담소는 지난 2016년을 창립 60주년의 해로 보내면서 우리나라 최초의 법률구조 기관으로써 자부심을 가지고 백년을 향해 나아간다는 전망을 세운 바 있다. 이러한 전망의 토대로 삼고자 상담소의 역사를 바로 알고 널리 알리기 위해 상담소의 연대기를 연재한다. 상담소는 지난 2009년 「번민하는 이웃과 함께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50년사」를 펴낸 바 있으며, 이 연재는 이를 기초자료로 하였다.

제 관련 규정은 위헌이며 인권침해'라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또한 상담소는 4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한 달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호주제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에 나섰다. 5월 27일에는 호주제폐지를위한시민연대에서 호주제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민법개정안을 의원입법으로 발의(대표발의 : 이미경 의원)하면서 '호주제 폐지 272'를 발족했는데, 이날 국회에 접수된 민법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국회의원 수와 동일한 272명의 사회 각계각층 저명인사들이 호주제 폐지를 위한 여론 형성에 나서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편집부

▲ 책자와 비디오로 발간된 〈호주제 바로알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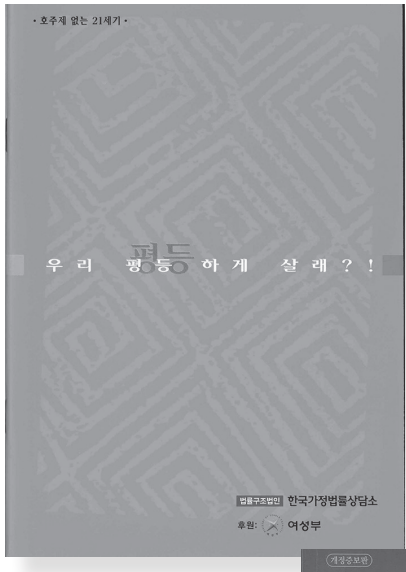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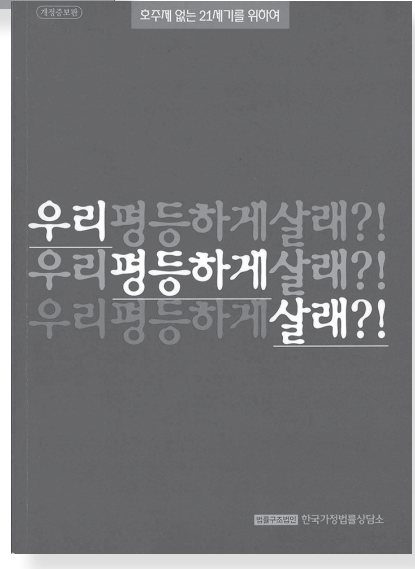


▲ ▶호주제 폐지 운동의 이론적 근거가 된 본소 발행의 〈우리 평등하게 살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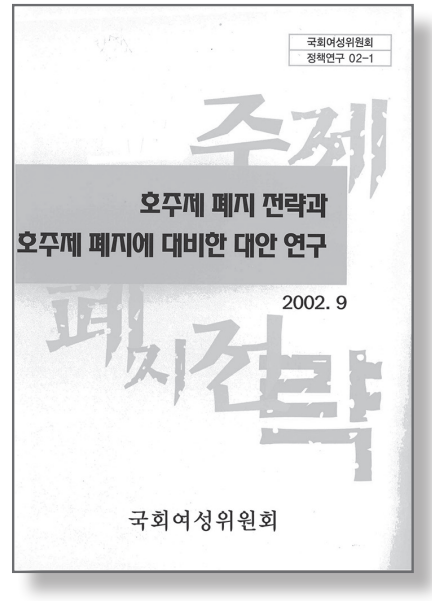


▲ 국회 여성위원회 에서 발간한 호주제 폐지 전략과 호주제 폐지에 대비한 대안 연구

## 이 혼 ⑬

### ● 신체적 질병이 이혼사유가 되지는 않는다

Q 문 53 | 저는 결혼해서 아이 낳고 살림을 하면서 건강이 극도로 나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자궁암 수술 뒤에 다시 당뇨병과 디스크가 발병하여 살림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하며 처가에 위자료를 청구해야겠다고 입버릇처럼 말해 왔습니다. 그리고 누워 있는 저를 발로 차기도 하고 폭언을 하기도 합니다. 남편은 주부가 역할을 못하니 집안이 엉망이라며 이혼소송을 해야겠다고 합니다. 병들었다는 이유로 이혼을 당하는지요?

A 부부는 동거·부양·협조 의무가 있고 어느 일방이 질병에 걸렸을 때에는 치료를 도와 회복시켜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판례에서는 임신 중 심장병이 생기고 출산 후 악화되었으나 본격적인 치료를 하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고 보이는 경우에 이혼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혼인생활 중 얻게 된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으며 남편은 아내의 회복을 도와줄 부부로서의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잠시의 불편과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 하여 이를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 식물인간 상태로 회복 가능성이 없다면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

Q 문 54 | 아내는 출산과정에서 생긴 사고로 10년째 식물인간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저는 회사도 퇴직한 채 아내를 간병했지만 병원에서는 더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장인과 장모도 이혼에 동의하고 있는데 이혼할 수 있나요?

A 아내의 신체적 질병이 이혼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나 장기간 식물인간 상태로 회복의 가능성이 없다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제6호).

### ● 놀면서 처부모의 도움만 바라는 경우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Q 문 55 | 대학까지 졸업한 남편은 결혼한 지 10년이 되도록 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도아이들 때문에 일을 할 수 없어 아버지의 도움으로 생활을 꾸려나가고 있는데 남편이 사업을 하겠다며 아버지에게 자금을 융통해 오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생활비를 대준 아버지께 사업자금까지 달라고 하고 싶지 않아 이혼을 하려는데 가능한지요?

Ⓐ남편이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지 않고 처부모에 지나치게 의존하려는 것은 혼인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여 이혼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제6호).

### ● 분수에 넘치는 사치와 낭비도 이혼사유가 된다

Ⓠ 문 56 | 남편은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데 규칙적인 월급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고급 차에 천만 원대의 카 오디오를 갖추고 골프까지 치러 다닙니다. 카드 명세서를 보면 룸살롱과 호텔 사우나도 출입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직장생활을 하며 남편의 카드빚을 갚고 있지만 계속 새로운 카드빚이 나와 빚이 전혀 줄어들지 않습니다. 아이들도 커서 점점 교육비가 많이 드는데 남편의 생활태도는 바뀔 것 같지 않습니다. 이혼할 수 있을까요?

Ⓐ 심한 사치와 낭비벽은 재판상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제6호). 남편이 상식을 벗어난 과도한 소비로 많은 채무를 발생시켰다면 남편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 도박은 이혼 사유가 된다

Ⓠ 문 57 | 결혼한 이래 남편은 도박에 빠져 도박장에서 며칠씩 지내다 돈이 떨어지면 집에 들어오곤 합니다. 도박 때문에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게 되었고 사채를 얻어 도박을 하다 빚을 지게 되자 저까지 채권자의 협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혼할 수 있는지요?

Ⓐ 상습도박은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민법 제840조 제6호). 판례에서는 1개월에 20일 정도 외박을 하면서 도박을 하고 빚을 지곤 하여 2차례에 걸쳐 앞으로는 도박을 청산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고도 도박을 계속하면서 가사와 자녀를 돌보지 아니한 처에게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다고 판결 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므559 판결).

### ● 상습적인 자살기도는 이혼사유가 된다

Ⓠ 문 58 | 제 아내는 저의 어머니로부터 꾸지람을 듣고 약을 먹은 것을 시작으로 해외여행을 안 시켜 준다고 음독을 해서 집안 식구들을 놀라게 한 일도 있고, 지난주에는 제가 회사일로 며칠 퇴근이 늦었더니 또 자살기도를 했습니다. 의사가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는데 저로서는 도저히 겁이 나서 못 살겠습니다. 이혼할 수 있을까요?

Ⓐ 상습적인 자살기도는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되므로 재판상 이혼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제6호). 또한 상습적인 자해 역시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가정법률상담 사례집「어떻게 할까요」중에서

Q 혼인 후 맞벌이를 하던 저는 연년생 두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서 남편의 만류로 어쩔 수 없이 전업주부가 되었습니다. 이후 남편은 혼자 경제를 책임진다는 이유로 걸핏하면 저에게 모욕을 주고 폭언을 해왔습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저를 집에서 놀고먹는 중이라며 무시합니다. 수시로 가계부를 검사하며 트집을 잡고 본인이 화가 나거나 불만이라도 생기면 일부러 생활비를 늦게 주거나 한 푼도 안 주겠다며 협박합니다. 그러다 얼마 전에는 친정어머니가 주신 용돈을 모아둔 비상금 통장을 발견하고는 돈 한 푼 못 버는 주제에 생활비를 빼돌렸다며 저를 도둑 취급하고 있습니다. 출산 후 직장에 복귀하려 했으나 만류한 것은 남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속적인 폭언과 경제적 압박으로 괴롭히고 있는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할 수 있나요?

A 귀하의 남편이 돈을 번다는 이유만으로 귀하를 모욕하고 생활비를 주었다 말았다 하며 경제적으로 압박하는 행위, 지출을 의심하며 허락을 받고 돈을 사용하게 하는 행위 등은 모두 경제적 학대 행위로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의 심히 '부당한 대우'라 할 수 있습니다.

'부당한 대우'라 함은 혼인관계의 지속을 요구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할 정도의 폭행, 학대, 또는 중대한 모욕을 의미하며(대법원 1999.2.12. 선고 97므612 판결), 일련의 행위가 모두 합하여 '부당한' 대우를 구성하는 경우 그 개개의 사실은 간접의 사실로 청구인이 일일이 주장하지 않아도 법원은 이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대법원 1990.8.28. 선고 90므422판결).

한편, 남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 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부간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 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2000.9.5.선고 99므1886 판결). 따라서 귀하의 경우처럼 남편이 아내를 무시하고 정신적인 고통을 주어 가정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라면 혼인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재판상 이혼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남편과 이혼에 관해 협의하여 협의이혼을 진행하거나 남편의 '부당한 대우' 및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들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천다라 상담위원

# 가문비나무의 노래

## 아름다운 울림을 위한 마음 조율

마틴 슐레스케 지음
도나타 벤더스 사진 유영미 옮김

니케북스, 2022(개정 22쇄)

전나무와 비슷한데 껍질이 진한 흑갈색이어서 '검은피나무'로 불리었다는 가문비나무는 우리나라에서는 남한의 일부 고산지대에는 한두 그루 정도 자라고 북한의 개마고원 해발 2,000미터가 넘는 봉우리가 이어지는 깊은 산골, 겨울이면 삭풍이 몰아치는 차가운 고산지대에 서식한다. 가문비나무는 아름다운데다 좋은 재질로 유명하다. 검은 껍질과는 달리 속살은 연한 황백색이어서 고급 내부 장식재로 이용되고, 종이를 만들면 탈색제를 덜 넣어도 고급 종이를 만들 수 있다고 한다. 또 나이테의 지름이 거의 일정하여 소리의 전달성이 좋으므로 고급 피아노의 울림판은 대부분 가문비나무를 사용한다.

그리하여 독일의 바이올린 장인 마틴 슐레스케는 "고지대에 빼곡이 자라는 나무들은 바이올린 제작자에게 가히 은총입니다. 이런 곳에 곧추선 가문비나무는 아주 위쪽에만 가지가 나 있습니다. 밑동에서 40~50미터까지는 가지 하나 없이 줄기만 쭉 뻗었지요. 바이올린의 공명판으로 사용하기에 이보다 좋은 나무는 없습니다. … 수목 한계선 바로 아래의 척박한 환경은 가문비나무가 생존하는 데는 고난이지만, 울림에는 축복입니다. 메마른 땅이라는 위기를 통해 나무들이 아주 단단해지니까요. 바로 이런 목재가 울림의 소명을 받습니다."

– 가문비나무의 지혜

"인생은 선택의 정글을 헤쳐 가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고 무엇을 포기할지 끊임없이 결정해야 합니다. 고지대의 가문비나무에서 우리는 귀한 지혜를 봅니다. 가문비나무는 어둠 속에 놓인 마르고 죽은 가지를 스스로 떨굽니다. 그 안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이지요. 그렇게 죽은 것을 떨쳐 낸 자리에서 울림의 진수가 생겨납니다! 나이테가 촘촘하고, 잔가지가 없고, 섬유가 긴 나무, 그것은 언젠가 바이올린이 되어 아름답게 울릴 질 좋은 목재입니다."

– Day 1

이렇게 시작하는 『가문비나무의 노래』는 바이올린 장인인 저자가 작업장에서 떠올린 깊은 사유의 글과 사진작가 도나타 벤더스가 찍은 52장의 인상적인 사진이 만나 이루어진 명상 책이다. 장인 마틴 슐레스케의 바이올린 제작 과정은 그 자체가 예술이자, 소명이며, 인생을 보여준다. 여기에 바이올린 탄생 과정의 아름다운 순간을 포착한 도나타 벤더스의 사진이 깊이 있는 문장들과 어우러져 깊은 울림을 준다.

마틴 슐레스케는 독일 슈투트가르트 출신으로 일곱 살 때부터 바이올린을 배우기 시작했고. 세계 최고의 바이올린 제작 학교로 손꼽히는 독일 미텐발트 국립 바이올린제작학교를 졸업하고, 뮌헨응용학문대학에서 물리학을 전공한 뒤, 바이올린 장인 페터 에르벤의 작업실에서 일하다가 1996년 함부르크에서 바이올린 마이스터 시험을 통과했다. 현재 뮌헨에서 바이올린 제작 아틀리에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곳에서 해마다 약 20대의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를 만들어 낸다.

사진작가 도나타 벤더스는 독일 출신의 세계적인 사진작가로 베를린자유대학교에서 공부했다.

이 책을 연말에 시작했는데 일년내내 조금씩 아껴 읽을 생각이다. 그렇게 읽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이숙현 편집부장

## 종무식 및 시무식

상담소는 지난 2022년 12월 30일 한 해의 업무를 마감하는 종무식을 가졌고, 2023년 1월 2일에는 시무식을 갖고 새해 업무를 시작했다. 본소 곽배희 소장은 종무식에서 다사다난한 해를 함께 보낸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여전한 코로나19 상황으로 사회적 피로감이 극심한 시기에 흔들림 없이 업무를 수행해 준 직원들에게 격려를 전했다. 시무식에서는 상담소의 소명인 법률구조 사업을 잘 수행하기 위해 무엇보다 직원들이 스스로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유념하자고 각별히 당부하였고, 대화를 통한 소통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다. 그리고 코로나19 상황의 변화에 따라 상담소 활동의 양상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어떤 자리에서든 번민하는 이웃들을 위해 변함없이 최선을 다하는 한 해가 되자고 독려하였다. (관련사진 2면)

## 이태영 선생님 24주기 맞아 국립현충원 찾아 참배하고 헌화하며 소중한 뜻을 기려

2022년 12월 17일 상담소 창설자 이태영 선생님의 24주기를 맞아, 16일 상담소 직원들은 아침 회의 시간에 조촐한 추모의 시간을 가졌다. 이후 곽배희 소장과 직원들은 국립현충원을 찾아 헌화하고 묵념하며 우리 사회에 법률구조의 씨앗을 뿌린 선생님의 소중한 뜻을 기리는 시간을 가졌다.

## 2022년도 정기 후기 이사회 2023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의결

상담소의 2022년도 정기 후기 이사회가 지난 12월 9일 열렸다. 이번 이사회는 차명희 이사장의 주재로 박양덕, 김의재, 조대연, 김명순, 곽배희, 임재연, 김영옥, 박영립, 김상용 이사 및 한미영, 최문원 감사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회의는 개회, 전회 회의록 낭독, 안건토의, 폐회 순으로 진행되었다. 안건토의에서는 2023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심의・의결이 이루어졌다.

## 본소, 경기주택도시공사(GH) -경기도 주거복지센터로부터 기부받아

경기도 주거복지 및 법률 서비스 강화를 위해

본소는 지난 2022년 12월 6일 경기주택도시공사 회의실에서 열린 기부금 전달식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GH)-경기도 주거복지센터로부터 경기도 주거복지 및 법률 서비스 강화를 위해 2천만 원을 기부받았다.

이에 앞서 지난해 10월 19일 업무협약을 체결한 양 기관은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 상담과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였고, 법률구조 수요가 늘어날 것을 예상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기부를 추진하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양 기관이 지속적으로 협조해 갈 것을 약속하였다.

이날 기부금 전달식에는 전형수 사장직무대행(경기주택도시공사), 정상길 센터장(경기도 주거복지센터), 정근희 운영팀장(경기도 주거복지센터)과 상담소 곽배희 소장,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 이숙현 편집부장이 참석했다. (관련사진 2면)

## 2022년도 직원재교육 및 자원봉사자 교육 '소록도의 희망'

2022년도 마지막 직원재교육 및 자원봉사자 교육이 지난 12월 22일 본소 8층 대강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교육은 '소록도의 희망'을 제목으로 박영립 본소 이사(법무법인 최앤박 대표변호사)가 한센병 환자의 인권침해 소송에 대한 경험과 실크로드 여행을 통해 문명의 진보를 환경의 도전과 인류의 응전으로 이해한 소회를 전하였다. 일제강점기였던 1916년부터 일본 정부는 일본에서와 마찬가지로 당시 조선에서도 한센병 환자들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정책을 실시하여 소록도에 한센병 환자들을 격리 수용했다. 이로부터 시작된 소록도 갱생원에서 이뤄진 환자들의 입소·노동·저축·단종수술과 낙태 중 상당 부분은 불법이었다. 박영립 이사는 소록도 갱생원  입소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보상 소송을 지원해 왔으며, 2005년 소송에서 패소한 이후 지금까지도 끝나지 않은 소송을 계속하고 있다.

이날 교육에는 본소 직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참석하였다. (관련사진 2면)

## 본소 연구용역사업 「연구보고서」 및 「만화로 보는 한국 사회의 여성과 가족」 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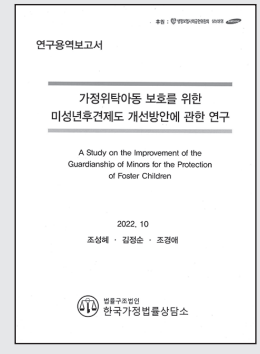
연구용역보고서

가정위탁아동 보호를 위한 미성년후견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Guardianship of Minors for the Protection of Foster Children

2022. 10

조성혜 · 김정순 · 조경애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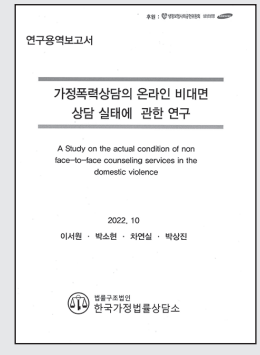
연구용역보고서

가정폭력상담의 온라인 비대면 상담 실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ctual condition of non face-to-face counseling services in the domestic violence

2022. 10

이서원 · 박소현 · 차연실 · 박상진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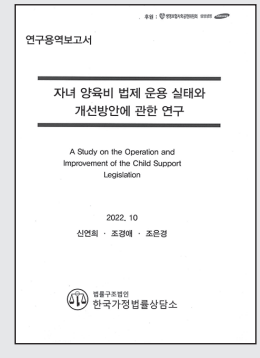
연구용역보고서

자녀 양육비 법제 운용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Operation and Improvement of the Child Support Legislation

2022. 10

신연희 · 조경애 · 조은경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본소에서는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의 연구용역사업으로 「가정위탁아동보호를 위한 미성년후견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외부 연구자 : 조성혜 동국대 법과대학 교수, 김정순 전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원, 내부 연구자 :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와 「가정폭력상담의 온라인 비대면 상담 실태에 관한 연구」(외부 연구자 : 이서원 한국분노관리연구소 소장, 내부 연구자 :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 차연실·박상진 상담위원) 그리고 「자녀 양육비 법제 운용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외부 연구자 : 신연희 성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내부 연구자 :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 조은경 상담위원) 등 3개의 연구보고서를 지난 11월 30일 발간하였다.

그리고 12월 15일에는 「만화로 보는 한국 사회의 여성과 가족 –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함께 하는 장차현실의 만화일기」도 발간하였다.

이 책자는 우리 사회의 가정과 가족구성원들이 겪고 있는 급속한 사회변화 및 이에 맞물린 가정의 다양한 모습들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상담소와 장차현실 만화가의 협업으로 이루어졌다.

### 저소득・취약계층의 법률구조 및 의료수급권보장을 위한 실무자회의

2022년 12월 8일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 징수부 윤인영 팀장과 조은희 과장이 본소를 방문하여 방역물품을 전달하고,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과 저소득・취약계층의 의료 수급권 보장 및 법률구조 사업 홍보를 위한 2023년도 양 기관 간의 협조 방안 등에 관해 논의하였다.

### 전규선 상담위원,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표창

2022년 12월 16일 본소 전규선 상담위원이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서민의 경제적 재기지원과 연계사업 수행에 기여한 공로로 표창을 받았다. 수도권 코로나19 재확산 등에 따라 시상식은 비대면으로 진행되었다. 본소는 2011년 5월 신용회복위원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과중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한 상담과 교육, 소송구조 등 법률구조 사업 전반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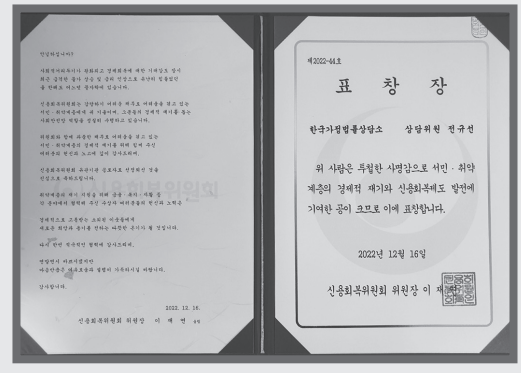

제2022-44호

표 창 장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상담위원 전규선

위 사람은 독실한 사명감으로 서민・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와 신용회복에도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2년 12월 16일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이 재 연

## 2022년 12월 상담통계

| 총 건수 4,616 | | |
|---|---|---|
| 법률상담 (3,864) | | |
| 면접 | 전화 | 인터넷 |
| 796 | 2,972 | 96 |
| 화해조정 | 소장 등 서류작성 | 소송구조 |
| 644 | 36 | 72 |

• 인터넷 정보 이용 94,949 건

2022년 12월 한달 간 상담소에서 진행한 총 상담건수는 4,616건이었다. 상담처리별로 살펴보면, 법률상담 3,864건(83.7%), 화해조정 644건(13.9%), 소장 등 서류작성 36건(0.8%), 소송구조 72건(1.6%)이었다.

법률상담 3,864건을 사건내용별로 살펴보면, 2022년 11월에 비해 부부갈등(5.7%→6.0%), 사실혼해소(0.6%→0.7%), 위자료·재산분할(8.4%→8.5%), 양육비(7.2%→7.6%), 면접교섭권(2.0%→2.1%), 친생부인(0.9%→1.2%), 입양(1.5%→1.8%), 혼인무효·취소(0.6%→0.7%), 가족관계등록부(2.6%→2.7%), 친양자(0.8%→0.9%), 개명(1.4%→1.6%), 가사절차(7.1%→8.4%), 가사기타(12.2%→13.0%), 개인회생(0.3%→0.4%)에 관한 상담이 증가하였다.

법률상담 3,864건을 상담방법별로 살펴보면, 면접상담 796건(20.6%), 전화상담 2,972건(76.9%), 인터넷상담 96건(2.5%)이었다.

2022년 월별 총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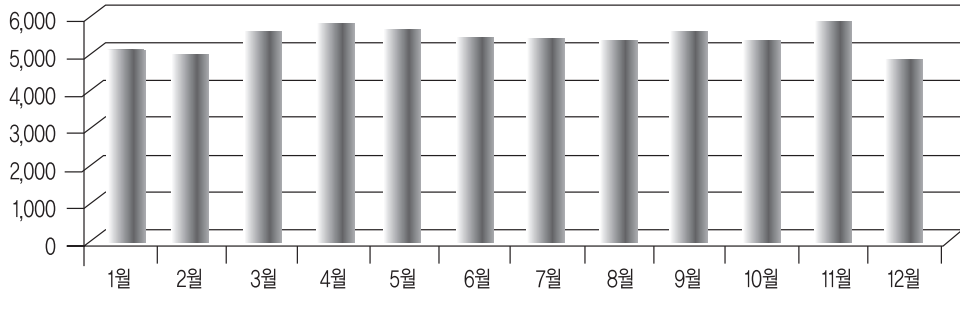

## 출장 상담 및 법교육

법의 생활화 운동의 일환으로 본소의 법 교육이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다. 출장 법 교육은 가족법 및 가족관계등록법, 가정폭력특례법 등을 주제로 하며, 본소 상담위원들의 상담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충실한 강의로 넓은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본소에서의 실습도 방역을 철저히 하며 순차적으로 진행 중이다.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프로그램이 비대면으로 진행 중이며, 순회상담의 경우도 상당 부분을 전화상담으로 전환해 시행하고 있으나, 방역지침의 변화에 따라 본소에서도 점진적으로 대면 프로그램을 확대하면서 효율성을 기할 계획이다.

12.1.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학생 대상 법률구조교육
- 최수진 상담위원

12.7. 순회상담 - 과천여성비전센터
- 조은경 상담위원

12.16. 영등포구가족센터 - 면접교섭관련 법교육
- 복미영 상담위원

● **가정법원 출장상담**

조경애, 박소현, 조은경, 복미영, 김진영, 최수진, 전규선, 천다라, 권지연 상담위원
김민선, 박슬기 변호사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은 12월 6일 경기도주택공사 기부금 전달식에 참석하였다. 8일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징수부 윤인영 팀장 등과 2023년도 업무협조 방안에 관한 논의를 하였다. 20일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리갈클리닉Ⅱ 수업을 진행하였다.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은 12월 8일과 21일에 서울가정법원에서 이혼등 사건을 조정하였다. 23일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에 참여하였다.

# 고맙습니다

## 2022년 12월 자원봉사자

**• 전화 안내를 도와주신**

강경숙, 권영덕, 김정혜, 문은전, 문은희, 박선화, 유문숙, 이병주 님

**• 야간상담을 해주신**

김소이, 방선영, 천정환, 황미옥 변호사님

**• 학생 자원봉사**

강정하, 권수민, 김기윤, 김나연, 김다솔, 김상은, 김석주, 김선욱, 김성현, 김세연, 김승현, 김 원, 김지민, 김지오, 김진효, 김채언, 김태은, 김하은, 도희원, 문송지, 민정원, 민지용, 박세현, 박인아, 박재우, 박태희, 백정은, 성은별, 신동은, 왕도경, 원지수, 이예원, 이은세, 이종원, 이진우, 임가현, 장아현, 전재식, 정재원, 정희재, 조유진, 조윤정, 채다은, 천소영, 최건희, 최신양, 최유진, 최준영, 하승연, 하유지, 한경희, 허경호, 허은서, 허인서, 현종원, 홍윤아 님

## 후원 고맙습니다

**• 평생회원이 되신 분**

이영애 님

**• 일반회원이 되신 분**

김연숙 님

**• 운영후원금을 주신 분**

경기주택도시공사-경기도주거복지센터, 장현실, 백용탁, 양병회, 신광렬, 김용헌, 이현혜, 천정환 님

● **회원이 되시려면** ●

일반회원들은 월 5천원씩 또는 년 5만원. 평생회원은 50만원을 일시 납입해 주시면 됩니다. 이름 밝히기를 원치 않는 분들은 아래의 구좌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주소가 변경된 회원은 반드시 상담소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협 317-0003-1418-11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연락처 : 02-780-5688 재무회계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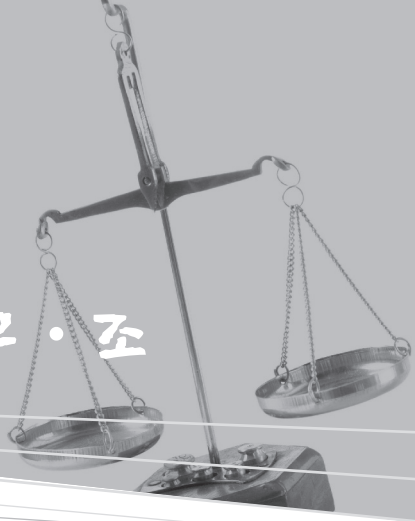

## 완결된 소송구조 사건

### 20여 년 동안 부당한 대우를 한 남편과의 이혼

**법률구조 2021-1-353**

**담당 : 김경수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등**

**내용 :** 원고(여, 40대)와 피고(남, 40대)는 법률혼 부부로 슬하에 한 명의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다. 피고는 혼인 생활 초기부터 원고에게 폭언, 폭행을 지속적으로 행하였다. 또한 경제적으로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며 상당한 채무를 발생시켰고, 피고의 부모와 형제는 피고와 함께 폭언을 일삼았다. 원고는 20여 년간의 부당한 대우를 더이상 견딜 수 없어 2018년 여름 무렵 혼자 집을 나왔다. 이후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연계되어 지내고 있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의 혼인 관계를 정리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의정부지방법원 2022. 10. 12.)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한다.

3. 원고는 피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22. 9. 1.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2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4. 원고는 사건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자유롭게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할 수 있다.

5.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을 해 온 남편과의 이혼

**법률구조 2021-1-406**

**담당 : 양진영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등**

**내용 :** 원고(여, 40대)와 피고(남, 40대)는 법률혼 부부로 슬하에 성인 자녀 3명이 있다. 피고는 혼인 초부터 폭력적 성향을 보여 기물을 파손하고 길에서 원고의 뺨을 때리기도 하였다. 피고는 혼인 생활 내내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는데, 피고의 모친 또한 원고의 뺨을 때리는 등 원고는 피고와 피고 모친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또한 피고가 제대로 된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 원고의 소득으로 생계를 이어가야 했고, 채무가 계속 늘어나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려야 했다. 이처럼 피고는 소득활동 없이 집에서 지냈지만 세 자녀의 양육에도 무관심하여 가사와 자녀들 양육은 오롯이 원고의 몫이었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의 혼인 관계를 정리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2022. 10. 14.)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사기 및 사업실패로 채무가 증대된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법률구조 2021-1-408**
**담당 : 김상군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여, 50대)은 직업이 변변치 않아 전전긍긍하며 소득활동을 하던 때에 제부의 제안으로 동업을 시작하였다. 식당에 납품하는 사업이었고, 신청인은 초기사업자금이 필요하여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되었다. 이후 제부는 재료를 구해야 한다며 중국으로 출국했고, 자금이 부족하다는 제부의 말에 신용카드 대출을 받아 보내주었다. 하지만 제부는 중국으로 출국한지 2개월이 넘도록 아무런 연락이 없었고, 신청인은 불안한 마음에 공장을 찾아가 봤는데 공장 문이 닫혀 있었다. 알아보니 여동생은 결혼식만 올리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고, 제부는 사업자금이라는 명목 하에 여동생의 돈까지 모두 가져가 버린 후 잠적한 것이었다. 그렇게 어처구니없이 사기를 당한 신청인은 생활이 급격히 안 좋아지기 시작하였다. 신청인은 남동생과 함께 노래방 운영을 위해 다시 대출을 받아 사업을 시작하였는데 경쟁업체들이 많고 텃세가 심해 생각만큼 잘 되지 않았다. 결국 적자를 극복하지 못하고 폐업에 이르렀고, 신청인은 채무지급 불능상태가 되었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인 신청인은 만성식도염과 섬유성 통증 증후군을 앓고 있으며, 본인보다 더 건강이 좋지 않은 배우자를 병간호하며 생활하고 있다. 이처럼 사기와 사업실패로 채무가 증대된 신청인은 채무를 해결할 길이 없어 개인파산 및 면책의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서울회생법원 2022. 12. 15.)
채무자를 면책한다.

### 감치결정 후에도 10년 동안 양육비 지급을 하지 않은 부에게 양육비 이행명령결정

**법률구조 2022-1-158**
**담당: 신수경 변호사**
**사건명: 이행명령**

**내용:** 신청인(여, 40대)과 피신청인(남, 40대)은 법률혼 부부로 슬하에 미성년자녀 3명을 두었으나, 2012년 이혼하였다. 당시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신청인을 지정하고, 자녀들의 양육비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2012년 12월부터 2027년 11월 30일까지 월 8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됐다. 이혼 후 피신청인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신청인은 2014년 양육비 이행명령을 신청하였다. 미지급 양육비의 일부인 1,000만 원에 대한 이행명령 결정이 있었으나, 피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감치 10일을 선고받기까지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의 양육비 미지급이 지속되자 신청인은 양육비 이행을 강제하기 위하여 이행명령에 대한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인천가정법원 2022. 11. 23.)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인천지방법원 2012드단** 이혼 등 사건의 2012. 12. 12.자 조정조서에 따른 사건본인 □□□, △△△에 대한 양육비지급의무의 이행으로, 2022. 8.까지 미지급 양육비 중 일부인 800만 원을 2022. 12.부터 10개월간 매월 말일에 80만 원씩 지급하라.
2.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 사기를 당하여 채무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법률구조 2022-1-189**
**담당 : 신은숙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남, 60대)은 서울에서 카페를 운영하여 큰 돈을 벌었고, 자녀의 교육을 위해 배우자와 자녀들을 미국

으로 보내고 혼자 한국에서 생활을 하였다. 자녀들의 뒷바라지를 위해 제법 큰 음식점을 운영하기 시작하였으나 생각처럼 장사가 되지 않아 장기간 적자가 지속되었다. 그러던 중 어떤 사람이 접근하여 본인에게 가게를 맡기면 제대로 운영해 보겠다고 호언장담하여 운영을 맡겼다. 하지만 그는 신청인 몰래 가게 보증금과 월세를 횡령했을 뿐만 아니라, 신청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함부로 사용하였다. 알고 보니 그는 신청인의 재산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이었다. 그렇게 사기를 당해 빚까지 지게 된 신청인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건강이 악화되었고, 오갈 곳이 없어 쪽방에서 생활하였다. 현재 신청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어, 수급비와 노령연금을 합한 월 70만 원의 소득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으며 2억 원에 달하는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어 상담소에 개인파산 및 면책의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서울회생법원 2022. 11. 25.)

채무자를 면책한다.

**양육비이행명령을 통해**
**미지급 양육비 4,000만 원을 일시금으로 지급받고,**
**1,000만 원에 대한 정기금 지급 결정을 받음**

**법률구조 2022-1-209**

**담당 : 이영임 변호사**

**사건명 : 이행명령**

**내용 :** 신청인(여, 40대)과 피신청인(남, 50대)은 법률혼 부부로 슬하에 미성년자녀 2명을 두었으나, 2009년 조정이혼 하였다. 당시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신청인이 지정되었고, 자녀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피신청인은 양육비로 자녀 1인당 25만 원씩을 매월 15일까지 신청인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이혼 후 현재까지 3개월분의 양육비만 지급하였다. 신청인은 미지급된 자녀들의 양육비 7,400만 원을 지급받고자 이행명령신청에 대한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본사건 재판부의 합의 권유로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미지급 양육비 7,400만 원 중 양육비 5,000만 원을 지급하되 일시금으로 4,000만 원을 지급하고, 2022년 11월부터 10개월간 10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서면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재판부로부터 이에 대한 참고서면을 송달받은 후 4,000만 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였고, 분할지급하기로 한 양육비 1,000만 원에 대하여 이행명령결정을 받았다.

**결과 :** 승소(서울가정법원 2022. 11. 29.)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서울가정법원 2009드단○○ 이혼 및 위자료 등, 2009드단**(반소)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사건의 2009. 12. 2.자 조정조서에 따른 의무의 이행으로 2022. 6.까지의 미지급 양육비 중 1,000만 원을 분할하여 2022. 11.부터 20개월간 매월 말일에 50만 원씩 지급하라.

2.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

# 2023년 1월 교육부

## 이혼, 현실과 미래 더 생각해보기

**부부갈등 및 이혼에 관해 보다 차분하고 객관적으로 심사숙고함으로써 후회 없는 결정을 하도록 돕는 전문 상담프로그램**

▶ 대상 : 결혼생활의 어려움으로 이혼을 고민하고 있는 남녀
(당사자 외 참여불가)
▶ 내용 : - 1단계 : 법률상담 및 이혼 관련 비디오시청
매주 평일 상시
- 2단계 : 집단심리상담
(이혼 전 교육 1단계 참가자, 사전예약 필수)
연중 매월 둘째 • 넷째 월요일 오후 2시~4시
(1월 9일, 2월 13일, 2월 27일)
▶ 강사 : 김명순 소장 (세은심리상담연구소)

## 부부관계 향상을 위한 공개강좌

**- 김병후 원장과 함께하는 부부갈등과 상처 다루기 -**

**가족 • 부부상담 전문가의 강의를 통해 행복한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상처받은 관계를 치유하기 위한 공개강좌 프로그램**

▶ 일시 : 2023년 2월~11월 매월 넷째 목요일 오후 3시~5시
(※ 12월은 휴강)
▶ 대상 : 참여를 원하는 사람 누구나 (사전예약 접수만 가능)
▶ 강사 : 김병후 원장 (정신과 전문의, 김병후정신건강의학과)
▶ 강의방법 : zoom을 통한 비대면 강의 / 대면강의
▶ 일정 및 강의주제

| 일정 | 강 의 제 목 |
|---|---|
| 2월 23일 | 행복의 조건 |
| 3월 23일 | 너의 의미 |
| 4월 27일 | 분노는 과학이다. |
| 5월 25일 | 인간답게 살기 위한 선행 조건인 자율성 |
| 6월 22일 | 관계에서의 상처 |
| 7월 27일 | 공감능력 |
| 8월 24일 | 폭력적인 배우자에 대항하는 법 |
| 9월 21일 | 의심, 피해망상, 그리고 조현병 |
| 10월 26일 | 마음이란 무엇인가? |
| 11월 23일 | 부부대화법 |

## 비혼모 가정을 위한 워크숍

**「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함께 하는 엄마랑 아기랑 행복 캠프 」**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어려움 등을 겪는 비혼모 가정을 위한 강의와 교육, 심리상담 그리고 쉼과 치유의 시간을 갖도록 하는 자녀동반 캠프

▶ 일시 : 2023년 3월
▶ 대상 : 참여를 원하는 비혼모 가정
▶ 후원 : SAMSUNG **삼성생명의 지원으로**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가 함께 합니다.**

## 등지교실

**나와 가족의 정신건강과 행복한 가족관계형성을 돕는 교육강좌**

▶ 일 시 : 매월 둘째 수요일 오후 3시~5시
▶ 대 상 : 서울가정법원 등 보호처분 대상자
▶ 진 행 : 이서원 소장(한국분노관리연구소),
황순찬 초빙교수(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일정 및 강의제목

| 일 정 | 강 의 제 목 | 강사 |
|---|---|---|
| 1월 11일 | 분노 : 마음대로 안 되는 세상,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 이서원 소장 (한국 분노관리 연구소) |
| 2월 8일 | 조바심 : 될 듯 말 듯, 원하는 걸 빨리 이루고 싶다 | |
| 3월 8일 | 미움 : 내가 싫어하는 걸 가진 너, 너를 멀리하고 싶다 | |
| 4월 12일 | 우울 : 자꾸 어긋나는 일들, 내 뜻대로 살고 싶다 | |
| 5월 10일 | 열등감 : 나보다 잘난 너, 나 잘난 맛에 살고 싶다 | |
| 6월 14일 | 후회 : 원하지 않았지만 일어난 일, 현명하게 살고 싶다 | |
| 7월 12일 | 매사 불만족과 관계갈등을 초래하는 성격장애 | 황순찬 초빙교수 (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 8월 9일 | 시간이 흘러도 엷어지지 않는 고통, 트라우마 | |
| 9월 13일 | 삶의 의지를 약화시키는 기분장애 | |
| 10월 11일 | 존재를 삼킨 타인의 시선, 불안장애 | |
| 11월 8일 | 모든 걸 끝장내겠다는 충동, 불안조절장애 | |
| 12월 13일 | 갈망에서 시작된 절망, 중독장애 | |

## 교사들을 위한 법 교육 - 교원직무연수

**가족법 및 폭력예방교육을 통해 전국 초 • 중 • 고 교원의 전문능력 함양을 돕는 연수 프로그램**

▶ 연수과정명 : 법과 생활
▶ 과정구분 : 전문성향상 과정
▶ 연수기간 : 2023년 1월 17일(화) ~ 19일(목), 1일 5시간, 3일간
▶ 이수시간 : 15시간(1학점, 성적산출 안함)
▶ 연수대상 : 서울 · 전국 초 · 중 · 고 교원 20명(선착순 모집)
▶ 연수운영 방법 구분 : (zoom을 이용한) 실시간 쌍방향 원격연수
▶ 연수경비(1인당 자비 부담액) : 무료
▶ 교과과정
- 가족법
가족법 변천사 및 법률구조사 / 혼인 관련 법률 / 이혼 관련 법률 / 부모 · 자녀 관련 법률 / 후견 관련 법률 / 상속 · 유언 · 유류분 관련 법률
- 가족관계등록 관련 법률
- 아동복지법 관련 법률
- 가정폭력 관련 법률
- 폭력예방교육의 이론과 실제
- 주택 임대차 관련 생활법률
- 개인파산·면책·개인회생 관련 법률

※ 일정 및 교육내용은 코로나19 대응조치에 따라 휴강 또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진행 상 반드시 사전접수 바랍니다.

● 장소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8층 강의실(변경될수 있으므로 사전문의 요망) ● 교육문의 및 신청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교육부
**T:** 1644-7077 **F:** 02-780-0485 **홈페이지:** www.lawhome.or.kr **E-mail:** edu@lawhome.or.kr **트위터:** https://www.twitter.com/LegalAidCenter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상담 ☎ 대표전화 1644-7077**

# “모든 가정의 수만큼 답이 있는 곳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평화와 번영의 상징이라는 계묘년 새해를 맞이합니다.
늘 새해는 겨울의 한 가운데에서 맞이하지만
이 엄동설한의 찬 바람 속에도
새봄의 희망이 자라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상담소는 언제나
우리 사회와 가정이 겪는 고통을 함께 나누어 왔습니다.

새해, 창립 67주년의 해를 맞이하게 되는 상담소는
지금까지 모든 시간을 그리 해 왔듯이
우리나라 최초의 법률구조 기관답게
법률복지 실현에 앞장서며, 특히 가정문제 전문기관으로써
급변하는 사회에서 가정과 가족구성원의 복리를 지키고
사회의 근간이 되는 가정을 바로 세워 간다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상담소의 역사에 한 페이지를 더해 갈 것입니다.

상담소의 이러한 역사는
언제나 신뢰와 성원으로 함께 해주시는 소중한 마음이 있어
가능한 것임을 늘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상담소는 법률구조 사업의 선구자답게 새해에도
변함없이 그리고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진심을 담아 깊이 감사드리며
평안과 건강 그리고 가정의 화목을 기원합니다.

2023년 1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임직원 일동

**www.lawhome.or.kr**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상담 ☎ 대표전화 1644-7077

●교육문의 및 신청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교육부
T. 1644-7077 F. 02-780-0485 홈페이지 : www.lawhome.or.kr